

NPO(비영리조직)의 活性化를 위한 立法方向

1997. 11.

研究者 : 朴英道(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I. 머리말	5
II. NPO의 概念과 機能	7
1. 概 念	7
2. 社 會 的 機能과 評 價	8
III. 主要國家의 NPO制度	11
1. 美 國	12
2. 英 國	19
3. 獨 逸	25
4. 프랑스	28
5. 日 本	31
IV. 우리나라에서의 NPO制度의 활성화를 위한 課題	38
1. NPO에 대한 시각의 定立	39
2. 市民團體內部的 문제	41
3. 一般市民側의 문제	41
4. NPO法의 立法方向	41
〈參考資料〉	
I. 日本의 市民團體支援法案	51
○ 市民公益活動을 행하는 團體에 대한 法人格부여등에 관한 法律案(新進黨)/51	
○ 市民活動促進法案(自民黨)/63	
II. 英國의 Charity(公益團體)法(1993년 법률제10호)	71
III. 프랑스의 非營利社團契約에 관한 法律(1901.7.1.)	99

I. 머리말

현대사회는 國家와 市民社會의 二元關係가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시민사회의 三元關係로서 파악되고 있다. 종래의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는 현재 “경제사회와 시민사회”로 분리되고 있으며, 이 市民社會(Zivilgesellschaft)가 국가와 경제사회의 동맹에 대항하는 구조로 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제도적 핵심은 非國家的이며 非經濟的인 자발적 결사(자원봉사단체, 민간비영리조직, 비정부조직)의 대두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들 自發的 結社의 대두는 “시민사회의 재발견·자기조직화”를 의미하며 이 자발적 결사가 오늘날 公共性的의 담당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인적 서비스의 제공, 경제개발의 촉진, 환경악화의 저지, 시민권의 보호, 복지, 의료, 교육, 문화·예술, 재난구조, 국제협력등의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그들 결사는 이익을 株主나 任員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며, 지금까지 정부의 수중에 맡겨졌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의 테두리외에서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대규모적인 독립된 민간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다.¹⁾

이러한 조직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단순한 물질 서비스의 영역을 넘어서 國家와 市民의 관계 그 자체에 영속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종래의 近代憲法 및 근대국제사회는 사람들의 활동은 국민주권·의회민주주의에 의하여 국가로 집약되고, 國家만이 국제사회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非國家的이며 비경제적인 자발적 결사는 국민주권·의회민주주의의 원칙으로 국가로 집약되지 아니하고 비국가주체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한다. 그들 단체는 “시민사회→국가→국제사회”가 아니라 “市民社會→市民社會”라는 결합관계이다.²⁾

이러한 비영리·자발적 단체의 대두현상은 국가의 능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뿐 아니라 사회·기술적인 변화도 반영한다. 즉, 사회·기술상의 역사적 변화에 의하여 인간의 필요성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政府에 대신하는 조직창설의 길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民間非營利團體는 정부가 할 수 있는

1) Lester Salamon, The Rise of the Nonprofit Sector [中央公論社(譯), 「福祉國家の衰退と非營利團體の擡頭」, 中央公論 1994.10., 401面 이하].

2)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국가단위의 立憲主義(의회주의, 기본권보장)를 확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권력의 地球的 擴散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비국가적·비정부적 결사에 의한 지구시민사회의 주체적 역할을 중시하여 “地球的 立憲主義”를 구상하려는 견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君島東彦, 「二十一世紀はNGOの時代か -地球市民社會の出現, 地球的 立憲主義の可能性」, 法學セミナー 1996.8. 46面 이하 참조.

것과 시민의 필요성의 간격을 해소할 수 있다. 그들은 과거의 시민운동이나 자원 봉사에 비해서 실제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계속적으로 責任을 지니고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서비스의 현상으로부터의 욕구를 정책제언으로서 하는 점 및 고용이나 GNP에 커다란 영향을 부여하는 등 오늘날의 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집단으로서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발적 결사의 활동범위, 활동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며,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의 부족, 다종다양한 전문용어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³⁾ 한편 國內法制에 있어서도 그들의 존재의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 정의는 한층 곤란하다. 자선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으며 그들을 전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그리고 비영리부문의 실제규모나 역할이 완전한 모습으로 제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도 국제법은 통상 국가와 국제연합과 같은 政府間機構를 주체로 하므로 그들은 국제법상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전부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한다.⁴⁾

여기서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거두고 있는 이들 비영리·자발적 민간시민단체와 조직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그 제도화를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명확히하여야 하는 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 비영리·자발적 결사는 조직, 규모, 활동내용과 지역, 재정을 필두로 매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主題別로 분류하면 인권일반, 여성, 어린이, 장애인, 개발, 환경 및 재난구조, 인도, 예방외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活動 내지 機能으로는 정보·계발, 교류·상호이해, 조언, 정책제언, 모니터, 원조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活動範圍에서는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등으로 분류된다.

4) 국제적 비영리·자발적 단체의 법적 지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이 국제적인 NPO에 대하여 공통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와 國際條約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다만 國際聯合이 아니나 유럽공동체(Council of Europe)가 1986년에 「국제적 NGO의 법인격승인에 관한 유럽조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the Legal Personality of INGOs)」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어떤 締約國에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국제적 NGO는 다른 締約國에서도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이 조약은 1991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1997년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이 체결하고 있다). 국제적인 NGO의 법적 지위문제는 Marcel Merle, 「A Legal Triangle : The Status of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s」, Transnational Association No.6, 1995를 참조.

II. NPO의 概念과 機能

1. 概念

NPO(Non Profit Organization), 즉 非營利組織이란 문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정부조직이나 영리기업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로 활동하고 있는 NPO에는 각종단체가 있으며, 이를 일의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L.Salamon의 定義에 의하면 “비영리조직”이란 ①비정부조직(NGO)일 것, ②공식적인 조직일 것, ③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조직일 것, ④자치적인 조직일 것, ⑤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일 것, ⑥자발적인 참가·자발적 기부를 포함하는 활동일 것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保健醫療, 사회서비스, 환경, 지역개발, 시민개발, 업계·직능단체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NPO의 정의보다도 넓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더라도 學校法人이나 醫療法人과 같은 조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들 특성에 부가하여 NPO란 어느 정도 계속하여 그 활동을 행하는 조직이라는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일과성의 시민조직은 NPO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NPO를 일반적으로 “自願奉仕團體”라고 부르기도 하나, 그러나 NPO는 자신들을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하나, 자원봉사단체라는 성격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라는 경우 그것은 개개인의 자원봉사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선의로 행할 것 즉 無償性이 그 성격이다. 그러나 NPO라는 경우 그 초점은 組織에 있다. NPO에 있어서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전부 자원봉사원도 있으나, 組織의 유지운영·발전·목적달성을 위하여 資金과 人力을 조달하고 收益事業을 영위하고 급료를 지불하여 사람을 고용하며, 또한 사회의 제문제와 계약이나 거래관계를 결부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그를 위하여 경영을 필요로 한다. 그 곳에서는 組織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기도 하나 그 利益은 개개인에게 분배되지 않는 즉 비영리적인 성격을 지닌다.

NPO와 유사한 의미로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는 용어가 있다. NGO란 非政府組織이라는 용어로서 번역되고 있으나 대체로 NPO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NGO는 國際聯合憲章에서 유래하는 용어로서, 국제연합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 내지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 설치된 단체가 아닌 것」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의이다. 同 憲章 제71조에 의하면 「경제

사회이사회는 그 권한내에 있는 사항에 관계가 있는 민간단체와 협의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국제단체간에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관계있는 국제연합가맹국과 협의한 후에 국내단체간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간단체가 국제적인 기관에 있어서 당사자로 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民間團體가 NGO이다.

NGO가 국제연합에서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經濟社會理事會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하고 국제조직연감에 등재되어야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NGO란 엄밀히 말하자면 위의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NGO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이며 또한 어떠한 목적을 지닌 국제적 단체라고 이해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이 NGO와 NPO의 차이는 그다지 의식하여 구별되고 있지 않으나, 넓은 의미에서 NGO도 국제적인 활동을 행하는 NPO라는 의미에서 NPO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⁶⁾ 또한 NPO·NGO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가 있으나, 이것은 特定地域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주민조직을 지칭하는 것이다.

2. 社會的 機能과 評價

NPO를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으며, 이를 자원봉사단체의 집합체 내지 無償社會奉仕團體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의 보완 내지 대체기관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 결과 규모적인 면에서도 NPO를 시민의 소규모집단으로 보거나 일정한 전문직을 옹호하는 職業集團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또한 활동 형태에서도 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보는 사람도 있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조언기능을 강조하거나 친목·교류를 위한 사람과 사람과의 결합 그 자체를 중시하는 입장 등 매우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NPO에 대한 시각이 천차만별인 이유의 하나는 NPO라는 용어가 “非(Non)”라는 접두어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적극적인 사회적 의의가 오해되어 각각 자신들이 가지는 문제의식을 투영하여 NPO

5) NGO의 정의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NGO라는 용어는 「非政府(Non-governmental)」가 아니라 「反政府(anti-governmental)」를 지칭하는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어 자원봉사단체, 민간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등의 명칭을 즐겨 사용하는 단체가 적지 않다. 특히 NGO는 1992년의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를 필두로 인권, 인구, 사회개발, 여성등과 관련한 일련의 世界會議에서 정부의 파트너로서 간주되어 議題의 설정, 인력동원, 정치적 지위의 구축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 國際關係에서 NGO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보통 INGO(International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라고 한다.

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 NPO가 그만큼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폭넓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NPO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美國에서도 실로 다양한 유형의 NPO가 존재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최근 NPO의 대두가 현저한 유럽국가에서도 NPO가 기대되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획일적이지 않다. 다만 외국에서의 NPO의 사회적 기능을 비교검토하여 그 구체적인 활동을 관찰하는 경우 그 사회적 기능 내지 역할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NPO를 통하여 전개되는 활동에는 개인의 취미, 스포츠 등의 활동도 포함되나 여기서는 특히 市民社會에 대한 공헌인 「사회참가활동」에 초점을 둔다. 사회참가활동의 사회적인 의의는 시민이 스스로의 사회를 자신의 손으로 구축하고 유연하게 사회를 변혁해간다는 점이다. 즉, 政府部門이라는 채널을 경유하지 않고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場으로서 NPO활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1) 先導的 役割

정부부문의 활동은 法律·豫算이 수반될 것이 그 활동조건이 된다. 한편 민간영리부문의 활동은 利益을 추구하는 것이 활동의 조건이 된다. NPO와 같은 민간비영리부문의 활동은 정부, 기업이 지닌 이러한 제약이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기업에 우선한 활동을 유연하게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장래에는 새로운 정부활동, 기업활동의 기초가 될 가능성을 지닌다.

(2) 多元的인 價値를 確保하는 役割

정부부문은 최대다수의 희망을 실현하려는 財貨·서비스를 제공하나 공정성·법정원리에 의하여 그 활동이 제약받는다. 민간영리부문(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중시하고 재화·서비스를 제공하나 利潤原理에 의하여 활동이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는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만으로는 그것을 충족하기가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NPO와 같은 민간비영리부문의 활동은 가령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도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하여 福祉등의 분야에서 다원적인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논리에도 기업의 논리에도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價値觀을 달성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의 병존을 가능하게 한다. 예술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의미는 매우 크다.

(3) 既存社會에 대한 批判者로서의 役割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政府·企業은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政府·기업은 각자의 행동원리에 따라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있으나, 때로 그것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政府·기업과는 행동원리를 달리하는 民間非營利部門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사회에 대한 감시기능을 거둘 수 있다. 민주주의사회로서의 건전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견제기능은 중요하다. 민간비영리부문은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과 대립할 뿐 아니라 상호협조함으로써 公益을 달성할 수 있다. 특히 공익달성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비추어본다면 그와 협조하는 방식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관계는 민간비영리부문이 정부부문, 민간영리부문에 대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임과 동시에 어떠한 긴장관계를 지닌 관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 個人的 地位向上

NPO와 같은 민간비영리부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거두고 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활동하는 個人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민간비영리부문을 통한 활동은 직장 등에서 협의의 “勤勞”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개인은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충실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의 인간관계욕구를 충족하는 장은 “企業”이 중심이었다. 기업이외에 “가족”, “지역사회”라는 생활의 장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민간비영리부문이라는 새로운 장이 발견된 것은 인간관계를 다원화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人間關係는 본래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한정적인 것으로 된다면 다양한 개인생활의 가능성을 좁힌다. 民間非營利部門의 場에서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인생활은 보다 충실한 것이 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NPO의 사회적인 기능을 일반화한다면 ①NPO는 주변의 지역사회나 관심분야에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의 발굴자이다. ②그러한 사회적 요구의 충족을 행정이나 기업에 요구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해결·충족에 즉응적, 선도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이다. ③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과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

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이다. ④그리하여 획득한 사회로부터의 자원을 자신의 활동의 생산성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활용하고 활동의 계속과 확대를 도모하는 혁신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국제적인 활동을 행하는 NGO는 국제정치사회에서 그 존재가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다. 國際聯合에서는 NGO는 아직 정식당사자가 아니나 그 지닌 영향력은 국제연합에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고 있다. NGO는 국제적인 활동분야에서 국제기관 또는 국가가 다룰 수 없는 문제에 활동한다. 이와 같이 ①NGO는 어떤 과제가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그 과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그 주장을 표명할 수 있다. 예컨대 국제연합에 대해 다수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연합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NGO는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가능하게 하며 각국의 국민간에 내포된 문제에 관해 그 해결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③NGO는 특히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전등 기술분야에 관해서도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집약할 수 있다. ④NGO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개발도상국가에 대해 그 문화·국정에 상응한 직접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⑤NGO는 국제회의에 있어서 논의된 문제의 초점을 자국의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즉 국제회의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거둘 수 있다.

Ⅲ. 主要國家의 NPO制度

주요 선진국가에서의 NPO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關聯法制度 정비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헌법상 “結社의 自由”가 보장되고 있으며, 법인격의 취득도 용이하며, 登錄 또는 申告를 하면 족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법인격의 취득과 稅制上的 優待措置가 분리되어 있으며,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주요국가의 제도의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명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법인격 취득	· 수수료납부하여 등록	· 회사법에 따름 · 법익법인제도는 없으며, 공익단체제도가 있음	· 비영리적이며 목적이 강행법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경우 신고	· 신고	· 비영리적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
세제우대	· 과세당국의 승인 · 법인격의 유무와 무관함 · 세제상의 우대에 차이가 있음	· 공익단체위원회의 승인 · 법인격의 유무는 무관함	· 과세당국의 공익성 승인 · 법인격의 유무는 무관함	· 과세당국의 공익성 승인 · 법인의 유형에 따라 우대 조치에 차이가 있음	· 법인격의 취득과 세제우대가 연동 · 우대에는 차이가 있음
정보공개 감독 등	· 과세당국에 연차보고서의 제출 · 연차보고서 및 비과세신청서의 공개	· 공익단체위원회에 연차보고서의 제출 · 동보고서의 공개	· 과세당국이 심사 · 소규모단체는 3년마다	· 공익승인사단은 매년 관할청에 결산서 제출 · 공익승인신청의 일건서류의 공개	· 주무관청에 연차보고서 제출 다만, 비공개

1. 美 國

(1) 概 要

미국은 NPO가 포괄적인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⁷⁾ NPO는 면세단체, 자선단체 등으로 불리우며 전체로서는 政府, 企業에 대해 제3섹터, 독립섹터, 자선섹터, 비영리섹터 등으로 부른다.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없이 稅務當局에 의해 승인되면 세제면에서 우대받으며 또한 체신관청에 승인되면 우편요금도 경감된다. 또한 미국에서는 법인격취득시 免稅가 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목적으로의

7) 미국의 비영리조직의 연구에서 선구적 업적을 남긴 Salamon教授의 추계에 의하면 1989년 현재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의 숫자는 전국에 걸쳐 약 114만 단체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들의 1989년현재 총수입은 3,430억달러로서 주된 수입원은 회비·사업수입이 51%, 정부의 보조금이 31%,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이 18%이다.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비영리조직으로는 하바드대학, 미적십자사, 미암협회, 미보이(걸)스카우, 록펠러재단, 뉴욕교향악단,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환경보전기금, 전국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부루킹스연구소등이 있다.

법인화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의 비영리조직에는 그 고유한 6 가지의 특징이 있는 바, ①公式的인 조직(법인화되지 않은 조직도 다수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各州의 법률로 인정되는 법인이다), ②民間部門의 조직(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것이나, 정부로부터의 원조를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③利益配分을 하지 않는 조직(이익은 조직본래의 사명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하며, 창립자·구성원간에 분배되지 아니한다), ④自主管理組織(외부의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아니다), ⑤自發的인 意思에 의한 조직(조직의 실제의 활동이나 업무의 경영면에서 有志에 의한 자발적 참가를 다수 포함한다), ⑥公共의 利益을 위하는 조직(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며 기여한다) 등이 그것이다.

NPO의 활동분야는 보건의료·교육·사회복지서비스·종교·문화예술·기타 자선활동등 전통적인 사회서비스분야에서부터 최근에는 소비자운동·환경보호·인권 옹호·개발협력 등 사회개혁적인 활동까지 매우 다기에 걸쳐있으며,⁸⁾ NPO는 全美 130만단체 이상 경제규모로서 연간총소득 3,160억달러(GDP 대비 6.8%), 고용수 930만인(전고용인구비율의 6.7%)에 달할 정도로 미국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비영리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歴史的인 理由이다. 미국은 주·연방정부가 수립되기전에 이미 지역공동체(community)가 형성되었으며 지역유지에 의한 소방대, 학교, 교아원조직 등이 다수 설립되었다. 그들은 정부성립 이후에도 군주제나 관료제의 부활을 우려하여 정부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영리조직은 미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둘째, 市場의 失敗이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으로서, 미국경제를

8) 美國의 NPO는 크게 3世代로 구분될 수 있다. 즉, 第1世代의 NPO는 1960년대까지의 전통적인 NPO로서 미국에서는 식민지시대부터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시민의 참가에 의해 행해진 전통이 있다. 교회·학교·병원·문화시설 등은 일찍부터 NPO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미국에서는 커다란 사회변혁이 일어났다. 흑인을 필두로 하는 소수민족의 폭동, 월남전에 대한 반대운동 또한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 등은 NPO에 대해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1970년대후반부터 NPO의 숫자가 증가하였으나 새로이 탄생한 대다수는 인권이나 환경, 도시문제 등을 활동주제로 하는 사회개혁형이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第2世代에 해당한다. 第3世代는 1980년대이후 정부나 지역개발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벤처사업가유형이나 NPO를 지지하는 NPO라 할 수 있는 MSO(Management Support Organization) 등으로서 이 제2세대와 제3세대는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伊藤裕夫, 「NPOの實態と期待との狹間」, 都市問題 1997.4., 8面 이하 참조.

지배하는 시장체계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의 非市場的인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기구의 하나가 정부이며, 또 다른 하나가 비영리조직인 것이다.

셋째, 政府의 失敗이다. 공공재화의 제공자로서의 정부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부가 활동하는데에는 국민 다수의 지지가 필요하나, 비영리조직을 만들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넷째, 多元的인 價値觀·自由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또한 다원적인 가치관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서 비영리조직의 활발한 활동에 의존한다. 시민권운동, 환경보호운동, 직장안전운동, 아동복지 및 여성의 권리확장운동 등은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시작한다.

다섯째, 連帶意識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시민은 고립되고 미약한 존재이며, 그들은 자기자신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유일인으로서 동료에게 원조를 강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호 협조하는 것을 지발적으로 배우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무력하다. 비영리조직은 바로 연대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다.

(2) 設 立

미국에서는 민간비영리조직을 NPO로서 일괄하여 州法으로 설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설립형태는 “法人(Corporation)”, “信託(Trust)” 내지 “人格없는 社團(unincorporated associations)”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NPO가 “법인”의 조직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수의 州에서 NPO에 대해 영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準則主義에 의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NPO는 법적으로는 “非配當의 原則”, 즉 활동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설립자나 출자자 또는 이사나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그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재투자할 것을 서약하는 민간법인으로 정의되며, 그 설립도 州의 소관청에 登錄하면 족하도록 되어있다. 즉, 법인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定款(정본·부분)을 작성하여 州의 소관청장관에 제출하며, 소관청의 장관은 제출된 정관이 州法에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며 또한 법정수수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정본을 파일(File)한다. 이 파일한 날 및 파일한 때로부터 법인은 존재를 개시한다. 設立은 1인이 설립할 수도 있다. 定款의 기재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주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법인의 명칭, 공익법인·공공법인인지의 여부, 존속기간, 법인의 주소,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사

원의 유무 및 해산시의 재산분배방법등이다.9)

(3) NPO를 구성하는 團體・組織

① 財團

비영리섹터를 구성하는 단체・조직은 약 114만이다. 그중 會員奉仕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약 40만이며, 公益奉仕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약 70만이다. 한편 비영리섹터가 고도로 발달하고 전문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仲介機關의 존재라 할 수 있다. 민간으로부터의 자선적 원조・기부를 다른 비영리조직에 중개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그것은 재단, 공동모금, 모금활동전문가로 분류된다.

우선 財團(Foundation)은 비영리섹터중 가장 유용한 존재이다. 1989년에는 민간으로부터의 자선적 기부는 1,159억달러였으나, 재단으로부터의 조성・기부는 79억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민간으로부터의 자선적 기부의 약 7%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재단으로부터의 조성은 자선적 기부의 주요재원은 결코 아니며, 비영리조직의 수입전체에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재단은 獨立助成財團(개인에 의한 자선목적의 기부를 관리하며 이들 기부금으로부터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조직에 배분한다), 企業財團(기업의 실적이 호조인 경우에 기업으로부터의 자금제공을 기금화하여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금을 소모한다), Community財團(커뮤니티의 주인으로부터의 기부를 재원으로 한다), 事業型財團(미국의 재단은 조성형재단이나 조성을 수행함과 아울러 사업을 실시하는 재단이 다수 있다) 등의 형태가 있다.

共同募金은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거두고 있으며,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직접기부를 호소하거나 기부를 약속받기도 한다. 募金活動專門家は 비영리조직에 대신하여 민간으로부터의 기부를 모금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비영리조직은 상근직원으로서 1인 또는 복수의 모금활동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으며, 대규모대학이나 미술관 등에는 20인~30인 정도의 모금활동전문가가 있다.

② 教會・宗教團體

미국의 법제에서는 종교단체는 국세청의 승인없이 자동적으로 免稅를 받으며 또한 세액공제되는 寄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비영리조직 전부에 부과되는 신고의

9) 미국의 주법상 NPO의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國立國會圖書館, 「アメリカNPOの登録節次」, レファレンス 1996.6., 114~129面 참조.

무도 면제된다.

③ 서비스제공단체

미국의 비영리조직의 중심적 단체로서, 여기에는 의료분야·교육분야·사회적 및 법적 서비스분야·시민서비스분야 및 문화예술단체 등이 포함된다. 특정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주의를 환기하는 啓發團體 등도 포함된다.10) 서비스제공단체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서비스·법률상담부문	· 개인이나 가정복지, 법률부조서비스 등 · 비영리섹터의 약40%를 차지함
시민·사회부문	· 계발단체, 공민권운동단체, 지역을 위한 조직 등 · 비영리섹터의 25%를 차지함
교육부문	· 초등·중등교육, 고등교육, 도서관, 직업학교 등 · 비영리섹터의 22%를 차지함
보건의료부문	· 병원, 진료소, 양노원, 개인간호시설 등 · 비영리섹터의 11%를 차지함
예술·문화부문	· 교향악단, 연극집단, 박물관, 미술관, 동·식물원 등 · 비영리섹터의 3%를 차지함

(4) 稅制措置

미국은 NPO가 법인격을 취득하더라도 본래의 사업은 자동적으로 과세에서 제외될 수 없다. 즉 미국에서는 法人格을 취득하는 법률과 免稅措置를 받는 법률이 별개의 것으로서, 당연히 각주의 법인인증을 위한 심사기준과 연방세법 및 각주의 지방세법상의 면세자격의 심사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課稅로부터 제외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NPO가 본래의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가에 대해 새로이 과세청의 심사를 받아 그에 합격할 필요가 있다. 非課稅資格의 승인은 연방국세청(IRS)이 행하나, 그 승인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는 거의 없다.11) 모든 종교

10) 구체적인 통계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서비스제공단체에는 자원봉사자가 평균4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약 300만인의 풀타임노동력에 상당한다. 이 노동력을 유급으로 고용하는데에는 약 520억달러가 필요하다. 적어도 1명의 전임직원이 있는 단체의 수는 1989년현재 16만 4,360인에 달한다.

11) 免稅團體의 資格을 얻기 위해서는 법전에 열거한 면세목적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스스로 선택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후 15개월 이내에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자료 설명서 등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國稅廳은 형식적인 면(조직형태심사)과 실제적인

단체와 연간세입 5,000달러 미만의 단체는 신청없이 비과세된다. 聯邦稅法典 (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c)(3)의 면세자격을 얻는 것은 공익봉사단체에만 해당한다. 동조는 公益奉仕團體(charitable organization)로서 “오로지 종교, 자선, 학술, 공공안전의 검사, 문예 또는 교육목적, 전국적·국제적 아마추어 스포츠경기회의 조성, 아동 및 동물학대방지의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법인과 모든 지역공동모금체, 지역공동체기금 또는 지역공동체재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의 서비스제공단체는 여기에 해당한다.

공익봉사단체는 다른 비영리단체와 마찬가지로 租稅가 면세될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과세상 기부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를 받을 수 있다. 빈곤한 자들을 지원하는 조직, 교육, 문화, 사회복지, 계발, 보건, 환경, 시민권, 아동복지에 관련되는 조직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①비과세자격승인을 얻지 아니한 NPO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비과세자격승인을 얻은 NPO라도 그 순이익의 어떠한 부분이 私的인 지분보유자 또는 개인의 이익에 사용되거나 그 활동의 실질적 부분이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활동이나 공직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운동에 참가 또는 관여하는 활동을 행하는 사회활동단체 (social welfare organization)나 시민의 모임(civil league), 정치단체 등도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면세자격승인을 얻은 사업자단체(세법 제501조(c)(6))나 친목단체(동법 제501조(c)(7))로 분류되는 NPO에 대한 기부금은 면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종차별적 단체라도 미국국내법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 제501조(c)(3)에 해당하는 단체에게는 免稅資格이 부여된다. 회원봉사단체는 과세상 기부공제의 대상이 되는 寄附를 받는 일을 할 수 없다. 제501조(c)(3)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가 단년도에 소득공제폭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법인이라도 5년간의 이월공제가 인정된다.

그리고 金錢에 의한 것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自宅에서 활동처까지 왕복교통비, 참가용피복비 등으로 실비변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조직한 NPO가 위의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공익봉사단체인 때에는 당해 비용을 기부금의 지출로 간주하여 그 참가자에게 소득공제를 인정한다.

면(단체운영심사)에서 심사를 하여 承認·否認을 판단한다. 이 행위는 법규재량행위로 간주되고 있어서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연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

제501조(c)(1)	의회법하에서 조직된 법인
제501조(c)(2)	재산보유권보유법인
제501조(c)(3)	종교, 자선, 학술 등
제501조(c)(4)	사회복지
제501조(c)(5)	노동, 농업단체
제501조(c)(6)	상업동맹
제501조(c)(7)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집단
제501조(c)(8)	우애조합
제501조(c)(9)	종업원조합
제501조(c)(10)	숙박시설부우애조합
제501조(c)(11)	교원퇴직기금
제501조(c)(12)	지방공제생명보험단체
제501조(c)(13)	묘지
제501조(c)(14)	신용조합
제501조(c)(15)	상호보험
제501조(c)(16)	농업협동조합
제501조(c)(17)	실업자보조신탁
제501조(c)(18)	종업원연금
제501조(c)(19)	퇴역군인단체
제501조(c)(20)	법률서비스단체
제501조(c)(21)	후인신탁
제501조(d)	종교·사제단체
제501조(e)	협동조합형 의료단체
제501조(f)	협동단체형 교육단체
제521조	농업협동조합

(5) 監 督

미국의 NPO의 감독은 각 NPO의 연차보고서의 제출을 매개로 主務官廳의 장관, 법원 내지 주의 법무장관이 경찰권(Police Power)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그

리고 NPO의 업종에 따라서는 그 설립에 있어서 연방, 주, 자치단체의 규제권한이 있는 관청으로부터 필요한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인가는 학교나 복지시설의 개설 등 광범위한 업종의 NPO에 필요하다. 한편 전국적 규모에서의 통일적인 행정규제의 면에서는 聯邦國稅廳이 카다란 역할을 거둔다. 연방국세청은 비과세승인후 25,000달러 이상의 세입이 있는 단체에 대해 ①연간자금보고서의 제출의무와 심사, ②연간보고서의 공개의무, ③방문조사의 실시, ④위반의 경우 벌칙(僞證罪의 적용, 비과세자격상실)의 적용이 있다.

2. 英國

(1) 概要

영국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의 기초, 추진역할을 하는 것은 공익단체(Charity)이다. 이러한 Charity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1601년의 “공익수요법(Charitable Uses Act)”의 前文이나 判例(Commissioner for Income Tax v. Pemsel, 1981) 등에서 「救貧」, 「교육진흥」, 「종교진흥」 및 「기타 공동사회에 유용한 활동」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²⁾ 영국법제하에 있어서는 공익자선목적에 가지는 조직은 법인격의 有無나 준거법을 불문하고 공익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인된 공익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公益團體法(Charities Act 1993)”하에서 설치된 공익단체위원회에 인정·등록되어야 한다.¹³⁾ 공익단체인가의 여부는 공익목적의 인정과 관련있다.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

12) 영국 법제에서의 Charity란 특별한 의미를 지닌 法律用語이며,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慈善”의 의미가 아니다. 이 Charity라는 법률용어는 명확한 제정법상의 정의가 없으며 charitable purpose(공익적인 목적)을 지닌 institute(단체)를 charity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이 charitable인가라는 문제가 있으나, 정부·법원은 charity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 charitable의 定義도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통일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이 charitable인가”를 제정법상 명확히 정의하기 보다는 개별적·구체적 판단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법상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1601년의 공익수요법(Charitable Uses Act) 前文에서는 공익목적이란 대학생의 지원, 교량의 복구, 교회나 예배당의 복구 및 결혼식의 주선등을 열거하였다. 그 후 공익수요법의 본문이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그 전문만은 남아 있으며 오랜동안 公益目的의 판정기준으로 되었으며, 이 전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공익목적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후 1960년 Charity Act의 제정으로 공익수요법의 전문을 포함한 전부가 폐지되어 현행법상 Charity團體 및 공익목적의 제정법상의 정의규정은 없다. 본문에서는 Charity를 “공익단체”라는 용어로 번안하여 사용한다.

13) 1994년시점에서 등록공익단체는 18만, 등록의무없는 공익단체 및 미등록공익단체는 약10만이다. 그 활동목적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600여 종류가 있으며, 공익단체는 일반적으로 政治活動을 행할 수 없다. 1992년의 공익단체법에 의하여 연차보고서 기

하고 공익단체위원회에 등록이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세법상의 우대조치가 행해진다. 공익단체의 주된 법형태는 信託, 법인격없는 사단 및 保障有限會社가 있다. 영국에서는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단체로서 인정되는 경우의 이점	공익단체로 인정되는 경우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 · 자본이득의 면세 · 상속세, 증여세의 면세 · 비거주용자산의 감면 · 특정사항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감면 · 위원회로부터 단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언, 원조 혜택 · 비공익단체에 비해 일반대중이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자금원조를 받기 용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정치활동의 금지 · 계속적인 상업적 활동의 제한 · 단체운영자가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의 제한 · 단체법상 기타 제한

(2) 公益團體의 登錄節次

현재 공익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1993년 공익단체법에 따라 공중에 대한 周知와 공익단체위원회의 監督을 위하여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다만, 公益團體인가의 여부는 등록의 유무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이 “公益性”이 있으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익단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등록부의 등록은 단순히 공익단체로서의 지위를 추정하는 효과를 지니는데 불과하다. 등록은 모든 공익단체에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登錄義務가 있는 단체는 ① 1993년 공익단체법 제93조제3항에서 영속적 기탁재산을 가지는 공익단체 ②토지를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공익단체 ③총수입이 연간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공익단체이다. 그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단체를 설립하려는 개인은 공익목적에 위한 寄附를 받거나 자금조달 등을 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운영하며 목적수행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의 법적 형태 및 管理規則을 결정한다. 공익단체의 대부분이 신탁이었으나 1960년 공익단

타 문서에 관하여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며 그 심사에 복종하도록 되었다. 공익단체센터의 총수입은 1990년까지 170억파운드로 추정되며 이것은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한다. 동년도에 정부로부터의 지원(보조금·사업위탁비 등)은 23.6억파운드,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5.2억파운드이며, 공익단체센터의 총수입의 17%이다. 영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 공익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신속하게 시민의 요청에 부응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사업을 민간의 공익단체에 적극적으로 맡기는 경향이 많다.

체법에서 명시적으로 신탁이외의 법적 형태를 지닌 공익단체(법인격없는 사단, 보장유한회사 등)가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공익단체를 會社로 할 것인지 아니면 信託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공익단체위원회에서도 자산액의 크기, 설립목적중 사업활동을 하는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법적 형태를 권고하는 정도이다.

둘째, 공익단체위원회의 登錄部에 등록신청을 한다. 이 경우 송부하는 서류로는 ①공익단체의 법적형태에 적합한 관리규칙의 草案 2부(2부는 국세청에 송부) ②공익단체가 등록신청전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관한 정보, 會計報告書, 활동보고서 등이다. 이 초안은 당해 공익단체가 어떠한 法的 形態를 취하는가에 따라 약간의 형식의 차이가 있다. 공익단체위원회는 단체의 법적 형태별로 초안의 定型書式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등록신청시에 공익단체위원회에 송부된 초안은 공익단체를 규제하는 법과 선례에 정통한 職員과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法律家가 심사한다. 그 결과 단체가 공익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의 稅務仲裁訴訟局(Financial Intermediaries and Claim Office)에 회부한다. 공익단체위원회가 당해 단체를 공익단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당해 단체에게 통지한다. 또한 草案의 修正으로 등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초안의 수정을 당해단체에 요구한다. 국세청이 등록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國稅廳은 공익단체법 제4조제2항에서 “공익단체로서의 등록에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공익단체가 등록부에 기재되는 때에 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단체가 조세감면을 받을 가치가 있는 공익목적의 유무에 대해서는 委員會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때로는 위원회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공익단체의 등록은 단체를 감독하기 위한 등록과 조세감면을 연동시키기 위한 수법이다. 그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委員會이나, 실제로 징세업무를 수행하는 國稅廳의 異議는 실무상 매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공익단체위원회와 국세청의 논의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신청을 한 단체도 논의에 참가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까지 위원회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초안의 수정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草案의 修正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인정되기까지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넷째, 공익단체위원회와 국세청은 당해단체로부터 요구한 수정이 완료된 管理規則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섯째, 登錄簿에 등록단체의 명칭과 주소, 거래은행 기타가 기재된다. 현재 등

록부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997년에는 會計報告書, 年次報告書등도 등록부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일반의 열람과 위원회의 조사감독에 제공되고 있다.

(3) 公益團體委員會

공익단체위원회(Charity Commissioners)는 1853년의 公益信託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다양한 민간공익조직인 공익단체의 등록제를 통한 수준유지를 도모하는 독립된 심사권한과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상 공익단체는 이 위원회가 公益目的이라고 판정한 경우에 등록이 인정되며,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위원회의 관할은 잉글랜드·웨일즈이며 이들 구역내에 3개의 사무실을 두고 직원수는 약 700명이다. 위원회의 대표인 공익단체위원은 상근 3명이며, 내무부장관이 임명한다. 현재는 달리 2명의 비상근위원이 있다.¹⁴⁾ 公益團體委員會는 공익단체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공익단체에 대한 권고 및 정보제공을 하며 공익단체의 악용, 남용을 견제하고 조사한다.¹⁵⁾

그 조직은 ①公益團體部(공익단체단체에 대해 조언이나 권고를 함)¹⁶⁾ ②조사부(공익단체의 不正이나 공익단체자금의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조사를 함) ③감사부(질문서를 송부하고 회계보고서를 조사함으로써 공익단체를 감사) ④등록부(등록시 단체가 공익성을 가지는 가를 결정하며 공익단체의 정보의 갱신을 행함) ⑤법규부(법률문제를 다루며 새로운 사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행함) ⑥정책부(공익단체위원회의 정책작성이나 재검토를 행함) ⑦공익단체서비스부(공익단체와 밀접한 접촉을 하며, 공익단체가 양호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함) 등이 있다.

14) 상근위원은 2인 이상은 法廷辯護士 또는 事務辯護士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비상근위원은 단체관계의 학식자 중에서 선임한다.

15) 위원회는 직접 公益團體의 관리나 운영을 지시할 수는 없으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즉, ①단체의 登錄簿를 작성하고 등록시에 공익단체로서 적합한 단체인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단체의 관리규칙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며 또한 일반 공중에게 단체운영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공익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助言을 수행한다. ③공익신탁수탁자나 공익신탁관리자에 의한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다. ④수탁자나 관리자의 권한남용이나 단체의 목적 및 실제활동이 공익적인 것인가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수행한다. ⑤조사결과 권한의 남용이나 단체운영을 잘못된 임원의 解任과 새로운 임원의 임명을 수행한다.

16) 공익단체부는 특히 소규모 공익단체에 대한 해산, 합병 기타 신탁자의 지명, 수탁자에게 재산을 위탁하는 업무, 자본지출에 관한 허가업무, 지방공익단체의 합병에 관한 관리규칙의 책정업무 기타 公益團體法 제74조와 제75조에 관련하는 단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登錄公益團體의 類型

① 信託

위탁자가 資產을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양도하고, 수탁자가 그 목적실현을 위하여 관리운영한다. 통상 수탁자는 自然人이다. 사업내용은 기금외에 다양한 서비스제공이나 고아원의 운영 등이다. 등록공익단체는 거의 대부분이 信託이며, 등록공익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탁의 목적이 오로지 “公益”의 증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일부만 공익목적이 있는 것은 적격성이 없다.

② 法人格없는 社團

복수의 자의 합의에 의한 조직체로서 통상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법인격이 없으므로 財產所有는 개인 또는 다른 법인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사단은 다양한 목적으로 조직되며 그 숫자도 많다. 구빈, 교육이나 종교의 진흥 등 公益目的으로 조직되는 경우 등록공익단체가 될 수 있다.

③ 保障有限會社

영국에는 미국·프랑스·독일 등과 같이 비영리단체만에 대응한 법인제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자원봉사단체가 법인격의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의 營利會社에 적용되는 1985년 회사법(Companies Act)에 의해 법인화된다. 자원봉사단체는 회사청산의 때에 회사의 負債에 대해 회원의 사전에 보장된 유한책임을 질 따름이며,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보장유한회사라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法人廳에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법인청에 연차회계보고서, 세무보고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고, 年次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비영리회사에 대한 특례조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5) 稅 制

영국의 租稅法制는 공익단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서도 널리 규정되고 있다. 공익단체는 國稅廳(Inland Revenue)으로부터 면세자격을 승인받는 경우 그 본래사업 및 주로 당해 공익단체의 수익자가 수행하는 본래의 사업에 관한 사업(관련사업)에 대해 法人稅가 면제된다.¹⁷⁾ 통상적으로 국세청은 등록공익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면

세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단체위원회가 登錄承認에 앞서 국세청과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쌍방간에 사전견제가 충분히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단체가 행하는 비관련사업(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면세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란 關聯支配會社를 설립하고 그 회사로부터 배당 또는 기부의 형태로 이익을 수취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도회사를 설립하고 그로부터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를 취한다. 공익단체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는 印紙稅는 부과되지 않는다. 相續稅는 공익단체에 대한 생전증여·사후증여도 원칙으로 비과세된다. 개인의 기부는 기본세율에 의한 세액분을 공제하여 기부자가 기부하고, 그후의 공익단체가 그 분을 환급받는다. 법인의 寄附는 일정요건하에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6) 監 督

공익단체위원회의 監査部(Monitoring Division)에 의한 회계보고서의 조사, 調查部(Investigation Division)에 의한 조사, 일반으로부터의 통보, 신문보도 등으로부터 공익단체제도의 남용이 판명된 때 등록을 말소한다. 특히 위원회가 모든 등록공익단체를 항상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은 단체의 숫자가 많아서 곤란하다. 그리하여 일반시민으로부터 관리나 운영에 문제가 있는 공익단체의 通報를 받아 조사를 행할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조사가 개시된다. 이 경우 통보를 하는 자는 ①문제있는 단체의 명칭이나 등록번호 ②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의 요지와 배경사정 ③지금까지 잘못 사용된 자산의 금액 ④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의 증거서면 ⑤공익단체의 부정을 밝히기 위하여 통보자가 지금까지 시도한 내용 ⑥위원회의 관찰사항이외의 경찰이나 기타 단체에 통보한 내용의 상세 ⑦통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公益團體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受託者와 관리자의 해임 및 신규임명, 은행구좌의 동결, 자금운용의 금지, 관리자의 단체의 재산에 관한

17) 1988년 所得·法人稅法 제505조에 의하여 공익단체의 다음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된다. 즉, ①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한도에서 병원, 공립학교, 구빈원에 속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토지, 가옥등의 임대료 기타 수입 등 ②배당, 이자, 연차의 지불금 등 ③예배당의 수선에 사용할 수 있는 이자, 배당금 등 ④거래수입(조세면제의 범위제한이 있다). 예컨대 단체소유의 건조물의 입장료징수, 단체설비 등을 이용한 물건의 입장권판매, 공익단체의 신탁수탁자가 주최하는 바자회 등이다.

업무수행의 금지, 손실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損失回復요구, 형사사건발생시 경찰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공익단체에 대해 警告를 하고 그 후의 운영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3. 獨逸

(1) 概要

유럽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政府部門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시민참가형의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게 행해지지 않고 있다. 민간비영리·공익활동은 주로 宗教團體나 企業財團이 핵심을 이루며, 종교·문화·학술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나, 최근에는 환경문제나 難民問題 등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시민참가형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및 단체에 관한 특별한 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봉사단체에 관해서는 民法上 비영리사단체도가 주로 이용되며, 재단제도의 이용은 적다. 非營利社團은 일정한 요건의 충족하면 등록만으로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단법인이 되지아니하는 분야는 없다고 일컬어진다. 稅制優待措置를 받는데에는 세무당국에 의한 공익성의 인정이 필요하다.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세제우대조치를 받는다. 法人格의 취득과 세제의 우대가 분리되어 있다.

단체의 활동에 배려한 법제도가 가능한 배경으로서 헌법상의 사단설립의 자유보장(기본법 제9조)과 사회복지단체의 활동의 역사등이 있다. 1990년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의 우대조치를 개선하기 위한 團體活動促進法이 제정되었다. 다만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를 규제하는 結社法도 1964년에 제정되고 있다.¹⁸⁾ 1995년현재 세제의 우대조치를 받는 단체의 수는 약 24~28만이며, 그중 財團이 8000개, 특수한 성격을 지닌 법인이 수천개 있다.

(2) 非營利社團의 設立

獨逸民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은 사단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권리능력을 가진다(동법 제2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定款에 의한 설립행

18) 結社法(Gesetz zur Regelung des öffentlichen Vereinsrechts)에서는 결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의 중점을 국가, 사회 및 법질서를 정치적 행동에 의하여 변혁하거나 전복하려는 것에 대해 그 존재보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함께 관할법원의 등기부에 등기하면 법인격이 인정되는 登記社團(Eingetragene Vereine)이 될 수 있다. 등기에는 7인의 사원이 필요하며, 정관에 목적·명칭·주소·사원자격의 득실·사원의 출자·이사·총회소집방법 등의 기재를 요한다(동법 제57조·제58조). 비영리성이 요구되나, 收益活動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단체의 목적이 강행법규나 公序良俗에 반하지 않을 것도 요구한다. 등록후에는 관보로 고시된다. 사단의 등기부는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활동이 1개의 州內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州內務長官의 소관, 2개 이상의 주에 관계하는 경우에는 연방내무장관의 소관이 된다. 등기사단이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때에는 권리능력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민간비영리·공익활동에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서 法人格없는 社團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많다.¹⁹⁾

(3) 稅 制

獨逸의 조세법제는 민간비영리·공익단체는 法人格의 有無에 관계없이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자격승인을 획득하면 본래의 사업 및 관련사업에는 法人稅 등이 면세된다. 면세자격의 승인을 받으려면 租稅通則法에 의한 적격성판단을 위한 일반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으려면 “公益性”이 인정되어야 한다. 공익은 自益이 아닌 일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되나, 그 범위는 매우 넓으며 애완동물의 사육 등도 공익목적이 된다. 국가나 행정의 계획에 반대하는 것(예컨대 원자력발전소건설이나 도로건설에 대해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활동 등)도 공익성이 인정된다. 공익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裁量性이 배제되고 있다. 社團의 설립시에 다액의 기본재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익성에 관한 구체적 인정기준은 조세통칙법에 규정되어 있다.²⁰⁾

19) 독일에서는 1997년 현재 100만개이상의 민간비영리·공익단체가 존재한다. 그 중 법인격이 있는 것은 30만정도이며, 그 대부분은 登記社團이다. 財團은 5000정도이며 그 중 3000 정도는 조성형, 나머지는 사업형이다.

20) 租稅通則法(Abgabenordnung) 제51조는 조세우대조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공익목적, 자선목적, 교회의 지원목적을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추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公益目的」에 관해서는 동법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의 활동이 물질적, 지적 또는 도덕적 영역에서 사심없이 공익을 촉진하는(Allgemeinheit zu fördern)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경우”이며, 이러한 활동으로서 학술, 연구, 교육, 예술, 문화, 종교, 국제협조, 개발원조, 환경보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無私心性”에 관해서는 동법 제55조에서 “단체의 자산은 정관에 따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 구성원 또는 사원은 단체의 자산으로부터 어떠한 이익배당을 받을 수 없을 것 및 정당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지원 내지 조성을 위하여 그 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審査는 신청단체를 소관하는 세무서가 행한다. 신청시의

한편 공익목적에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는 가에 대해서는 「1977년 租稅通則法の適用指針(Anwendungserlaß zur AO 1977)」이 있다. 동 지침에 의하면 정치적인 의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政黨을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은 공익목적이 아니나, 정치활동이 정관에 규정된 공익목적의 추진에 이바지하는 경우로서 그것이 법인의 주된 활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공익성을 손상하지 아니한다.²¹⁾

법인, 단체, 집합재산으로서 그 정관, 기부행위, 기타 조직의 기본원칙 및 사업의 실태로부터 판단하여 오로지 직접적으로 공익목적, 자선목적 또는 교회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법인세를 면제한다(법인세법 제5조제1항제9호).

收益事業을 행하는 경우 그 수입에 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익목적”이란 물질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영역에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통칙법 제52조).²²⁾ “慈善目的”이란 신체적·

심사에 부가하여 매 3년마다 서류에 의한 정기심사가 있다. 이 심사는 법인세 등 聯邦稅에 관한 것이므로 이관상 州稅에 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른 세법에 관해서도 면세적격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21) 이와 관련하여 聯邦租稅法院의 판례가 있다. 즉, 1976년에 설립된 환경보호 시민단체가 방사능폐기물의 재처리시설과 최종처분장의 건설계획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행하였다. 이 단체는 공익목적의 단체로서 조세우대조치를 받기 위하여 과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却下되었다. 단체의 소송에 의해 조세법원은 「원고는 정관에 의해서도 사실상의 사무수행에 의해서도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공익목적 즉 환경보호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여 과세청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과세청은 항소하여 이 단체는 공익사단이 아니라 정치결사이며, 공익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1984년 8월 29일 聯邦租稅法院은 과세청의 항소를 기각하여 단체의 공익성을 인정하였다. 판결은 독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개방되어 있다는 점, 환경보호의 문제가 정치의 특히 중요한 과제인 점, 독일에서는 핵에너지의 평화이용을 결정하였으나 고차원의 방사능폐기물의 최종처분은 매우 곤란하며 오늘날에서도 핵에너지에 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시민단체가 정관의 목적을 위하여 환경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은 공익과 관련되며 공익의 추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BStBl. II 1984, S. 844.

22) 租稅通則法 제52조 ①단체의 활동이 지적 또는 도덕적 영역에서 사심없이 공익을 촉진하는데 지향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그 촉진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의 범위가 예를 들면 특정가족에의 소속 또는 특정기업에의 종사와 같이 매우 폐쇄적이며 또는 그 범위의 구획이 특히 지역적 내지 직업적 지표에 의한 구별의 결과 영구적으로 적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익추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요건하에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익의 촉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학술과 연구, 교육과 양육, 예술과 문화, 종교, 국제협조, 개발원조, 환경보호, 경관보호 및 문화재보호, 향토사상의 촉진
2. 청소년보호, 고령자보호, 공중위생제도, 스포츠촉진. 체스는 스포츠로 본다.
3. 적용영역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국가제도의 일반적 촉진. 다만, 국민의 특정개별이해만을 추구하는 활동 또는 시읍면정치의 영역에서 한정된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동물사육, 식물재배, 크라인가르텐의 경작, 카니발 및 고해의 화요일, 사육제를 포함한 전통적인 관습, 군인 및 예비역군인의 원호, 아마추어무선, 모형비행기의 비행 및 개경주의 촉진

정신적·경제적 이유로부터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돕는 목적을 말한다(조세통칙법 제53조).²³⁾ “教會目的”이란 공법상의 법인인 종교단체의 활동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²⁴⁾

기부금공제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일 필요는 없다. 기부금공제를 위해서는 공제대상단체가 受取하여 발행하는 기부의 용도가 명기된 증명서가 필요하다(100마르크 이하의 경우에는 은행의 입금증명서로도 가능).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자선, 교회, 종교, 학술목적 기타 특히 증진할 가치있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에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의 5%한도로, 또한 학술, 자선목적 및 특히 증진할 가치있는 문화목적에 위한 지출은 소득의 10%까지 소득이 공제될 수 있다.

4. 프랑스

(1) 概要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한 결과 민간비영리·공익단체를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자유로운 활동에 규제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地方分權化의 촉진과 함께 민간비영리·공익부문의 육성

23) 租稅通則法 제53조(자선목적) 단체의 활동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사심없이 원조하는 것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는 자선목적에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

1. 신체적, 지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위하여 다른 자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자
2. 그 수입이 연방사회부조법 제22조의 의미에 있어서 사회부조의 기준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독신자 또는 세대주의 경우에는 기준액의 4배를 5배로 본다. 이 규정은 생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그 재산이 풍족하거나 그 재산을 그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경제상태가 특별한 이유로 궁핍상태가 된 자에 관해서는 수입 또는 재산이 여기에서 열거하는 상한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규정의 의미에서 수입이란 독신자 또는 세대주 및 기타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수입을 말한다.

a)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의 의미에서 수입

b)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해지거나 적절한 기타 수입

생계비의 청구권은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부조의 급부 및 가령 생계비의 급부가 없다면 사회부조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자에 대한 사회부조의 급부액이하의 생계비의 급부는 수입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4) 租稅通則法 제54조(교회목적) ①단체의 활동이 공법상의 단체인 종교단체를 사심없이 촉진하는 것을 지향하는 경우 당해단체는 교회목적에 추구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목적에는 특히 교회 및 교회의 교구집회소의 설립, 장식과 유지, 예배의 거행, 성직자의 양성, 종교교육의 교수, 매장, 사자의 기념품의 보존 및 교회재산의 관리, 성직자, 교회임원 및 교회고용자의 고용, 이들의 노후보장 및 장애보장과 이들의 과부 및 유아의 원호가 포함된다.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비영리사단의 자유(결사의 자유)는 1946년 憲法前文에 보장되어 1958년 헌법에 계승되고 있다. 民法典에서는 사단이나 재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있지 않다. 비영리사단은 「비영리사단계약에 관한 1901년7월1일의 법률(relative au contract d'association loi du 1er juillet 1901)」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²⁵⁾ 비영리사단에는 비영리로서 공익목적인 것과 공익목적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財團은 「민간공익활동의 진흥에 관한 법률(sur le développement du mécénat)」이 1987년 7월 23일 제정되어, 동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1901년법은 대단히 관대하며 무엇을 목적으로하는 사단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非營利社團은 신고의 유무에 의해 법인격을 가지는 것과 가지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법인격을 가지는 것도 공익성을 승인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된다. 공익성을 승인받은 비영리사단은 그렇지 아니한 비영리사단과 비교하여 권리능력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1995년 현재 신고비영리사단은 70~80만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중 공익성이 승인된 것은 약 200여단체이다.

(2) 各社團의 權利能力

① 無申告 非營利社團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으나, 설립된 때부터 유효하게 존재한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재산은 사원의 共有에 속하고 재산의 증여·유증을 받을 없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② 申告 非營利社團

법인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사단소재지의 관할행정청에 사단의 명칭, 목적, 소재지, 관리 또는 운영책임자의 성명, 직업, 주소 및 국적을 신고한다. 5일 이내에 수리증이 교부되며 그 후 관할청이 官報에 게재하면 법인격을 취득한다. 법인격을 취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인격은 제한된 것이며, 어떠한 재산도 無償으로는 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목적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不動産을 유상으로 취득할 수 없다.

25) 동 법률은 「結社法」이라고도 하며, 특히 제1장은 결사의 자유의 원칙외에 임의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프랑스단체법제의 근본규범이라고도 한다. 동법률은 결사에 관한 총칙, 공익단체, 종교단체(수도회)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4장의 해외단체부분은 삭제되었다).

③ 公益性承認 非營利社團

신고비영리사단이 공익성을 승인받으면 공익성을 승인받지 못한 신고비영리사단에 비해 광범위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定款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사업상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公益性的 인정은 Conseil d'Etat의 자유재량이 된다.²⁶⁾ 이 공익성인정심사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내무부가 요구하는 書類도 번잡하고 다수이어서 현재 이 사단의 수는 2,000여 개에 불과하다.

(3) 公益財團

財團에 관해서는 「민간공익활동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재단을 설립하는데에는 Conseil d'Etat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것을 필요하다. 당초의 資本이 최저 500만프랑이거나 활동을 항상적으로 행하는 재원이 확보될 수 있고 재정적 독립 및 공익성이 있으며, 또한 자금제공을 한 자의 대표자가 존재하거나 그 재단의 활동을 관할하는 관청의 장관이 이사의 1인으로 되고 있는 가등을 심사한다. 재산에 관련한 매매거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결산서, 회계제표를 매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企業財團

「민간공익활동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재단은 설립이 대단히 엄격하였으며, 동법은 재단을 정부의 강력한 규제하에 두었고 또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이되는 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하여 企業의 이미지제고와 민간공익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1990년 7월 4일에 「기업재단에 관한 법률(créant les fondations d'entreprise et modifiant les dispositions)」이 입법화되었다. 기업(민사회사, 상사회사, 공영기업,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은 최저 120만프랑의 出捐과 도지사의 인가로 기업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企業財團은 5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기업재단은 기업과는 별도의 법인격이 필요하며 자금은 정관에 기재된 기업으로부터만 받는다. 기부 및 다른 곳으로부터의 遺贈은 받지 못한다. 설립은 파리시청이 소관한다. 시청에 경리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신청자격은 매우 엄격하다. 신청자인 사단은 ①널리 일반적 이익(intérêt général)을 설립 목적으로 할 것, ②Conseil d'Etat가 제시한 정형에 따라 정관 및 부속정관을 규정할 것, ③활동지역이 광범위할 것, ④3년 이상의 활동실적, 사원이 200인 이상일 것 등이다.

(5) 稅 制

① 非營利社團에 대한 課稅

법인격을 가지는 비영리사단의 비영리활동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소유자산으로부터의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세액이 1,000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때에는 면세된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② 非營利社團에 대한 寄附金 등에 관한 세제우대

기업은 공익성을 가지는 일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拂入에 대해서는 1,000분의 2를 한도로 하며 또한 공익성이 승인되고 있는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에 대한 불입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한도로 과세이익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외의 납세자로 프랑스에 세법상의 주소를 가지는 자가 公益性을 가지는 일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기부를 하는 때에는 1.25%를 상한으로 하며, 공익성이 승인되고 있는 비영리사단 또는 재단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때에는 5%를 상한으로 기부 또는 불입의 합계액의 40%를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공익성을 승인받은 비영리사단에 대한 기부가 그렇지 아니한 비영리사단에 대한 기부에서 공제가 능한 범위가 다르다.

(6) 監 督

사단이나 재단은 설립후에도 다양한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제는 신고 비영리사단에 대해서는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성승인 非營利社團이나 財團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는 민법 제910조에 의한 단체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공익성승인 비영리사단이나 재단은 연차보고서나 재무제표를 사무소소재지의 관할청이나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日 本

(1) 概 要

일본은 1995년 1월초의 阪神·淡路大震災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외국과 같이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의 요구가 제기되었다.²⁷⁾ 현행공익법인제도하에서는 소규모의 기반이 취약한 자원봉사단체가 법인격을 취득

27) 자세한 것은 青山貞一, 「震災復興とNGOの役割」, 法律のひろば 1997.2., 33面 이하 참조.

하는 데에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法人格의 취득과 稅制의 우대조치가 연동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부여하는 주무관청의 심사가 엄격하다. 許可에 즈음하여 사단이나 재단의 설립후의 영속성이 중시되며 사단이라도 다액의 재산이나 다수의 회원이 요구되며 재단의 경우에는 역단위의 기본재산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공익법인이 거두어 온 역할은 행정의 보완이며 또한 행정청자신이 설립자가 되는 것이 적지 않다.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원적인 法人의 設立을 허용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발상을 보증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현재 제출된 각당의 법률안에는 허가에 대신하여 認可, 認證으로 하고 법인격의 취득요건도 완화되어 있으나²⁸⁾, 세제의 우대에 관해서는 新進黨에서는 가능한한 우대(세법의 개정포함)을 지향하고 있으나, 與黨의 안에서는 우대는 어렵다고 한다.

그리하여 NPO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정당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NPO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NPO法이라는 것은 두 개의 법률을 지칭한다. 첫째는, 非營利活動을 행하는 시민에 의한 단체(시민단체)가 간소하게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제도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다. 둘째, 그러한 단체에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를 행하는 경우 이를 경비로서 所得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를 행하기 쉽게 기부금에 관한 공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물론 현재에도 그러한 법률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민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이라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생협법인등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법인격을 취득하는 데에는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며 巨額의 기본재산이 필요하며 관청의 관할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행하도록하는 제약이 있었다. 그 때문에 다수의 시민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계약이나 거래, 자산형성, 고용확보, 피고용자의 대우 등에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기부에 관한 면세제도도 특정공익증진법인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대장성이나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은 법인만이 特定公益增進法人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제도도 기부금의 면세제도도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NPO법의 입법취지이다.²⁹⁾ 물론 민법 제34조의 개정이라는 방

28) 법인격의 취득은 民法 제34조에서는 “許可”로 되어 있으며, 허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부여하지 않으며 新進黨案에서는 “認可”로 되어 인가는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與黨案은 “認證”으로 되어 있으며, 인증은 일정한 행위 또는 문서의 성립 내지 기재가 절차에 따라 행해지고 있음을 공적기관이 확인, 증명하는 것이므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설립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도 있으나 그것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당분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려하고 있다. 1995년 11월에 新進黨이 법인제도부분의 “시민공익활동을 행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후 1996년 9월에는 기부금세제부분의 “법인세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중의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1996년 12월에는 여당 自民黨 및 社民黨·さきがけ에 의하여 법인제도부분만의 “시민활동촉진법안”을 제출하였다. 아울러 民主黨도 여3당안의 수정안을 1997년 2월에 발표하였으며, 共産黨도 1996년 6월에 要綱을 발표후 현재 법안작성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 법안의 심의는 1997년 11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예정되고 있으나,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2) 公益法人의 設立・監督

민법 제34조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에 있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公益法人은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법인은 기부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리도 공익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중간법인은 특별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립할 수 없으므로 민법을 개정하여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³⁰⁾

민법에 의한 것은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이나 다른 特別法에 의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 종교법인(종교법인법에 의하여 설립), 의료법인(의료법에 의하여 설립)이 있다.

민법 제34조의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 재단법인 	
특별법에 의한 법인	광의의 공익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 종교법인 · 의료법인 · 기타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 상공조합 · 기타 다수
영리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 	

29) 石村紀子, 「NPO法案」, 法學セミナー 1996.7., 52面.

30) 雨宮孝子, 「NPO, NGOはなぜ法人になるにいいのか」, 法學セミナー 1996.5., 32面 이하.

공익법인의 감독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은 언제나라도 직권으로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민법 제67조), 또한 法人이 설립허가를 받는 조건 또는 주무관청의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1조).

(3) 稅 制

공익법인의 보호육성의 입장에서 국세, 지방세에 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인 법인세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공익법인이 지불을 받는 이자 등에 관해서도 원천징수되지 않고 非課稅된다. 수익사업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액공제 등이 행하며 나아가 세율의 27%를 곱하여 산출한다. 控除 등의 중에 간주기부금의 손금산입(수익사업수입의 27%가 한도)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로서 도부현세 및 시정촌민세, 사업세,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부동산취득세가 있다. 기부와 관련한 세금의 특례로서는 다음과 같다.

① 公益法人에 기부하는 경우의 세법상의 우대조치

<p>개인이 기부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 山林所得의 과세대상물건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인 때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 · 개인이 일반공익법인에 기부하여도 소득세의 기부금공제는 인정되지 않음 · 기부가 특정기부금(대장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및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행한 경우에는 기부자의 소득계산상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연간소득 × 25 - 1만엔까지 기부금공제 · 상속 또는 遺贈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비과세(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
<p>일반법인이 기부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등을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2항에 의해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損金으로 산입가능 ·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해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7조제3항제3호에 의해 보통법인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동액까지 별도로 손금에 산입가능 · 토지, 건물 등의 기부의 경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제6항에 의해 자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으로서 취급

② 公益法人이 기부한 경우의 세금

이 경우 수익사업이외에 속하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현금 등을 당해 법인의 공익사업에 편입한 경우 손금 산입한도액의 범위내에서는 손금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消費稅에 있어서 2기전의 과세대상고가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과세사업자가 된다. 공익법인소유의 공익사업용지는 비과세된다. 다만 미이용지나 본래의 공익사업이외의 용지에 관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地價稅가 과세된다.

(4) 현재 진행중인 市民活動促進法の 概要

	신진당안	여3당안
법률 명칭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법인격부여 등에 관한 법률안	시민활동촉진법안
법인 명칭	시민공익단체	시민활동법인
입법 목적	지역사회에서 그 주민이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행하는 시민공익 활동을 추진	시민활동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민활동의 건전한 발족을 촉진하며 나아가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대상 단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익활동의 정의 주민이 일정지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교육 또는 과학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환경보전 또는 국제적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그 활동에 관한 연락·조성활동을 포함)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시민공익활동단체의 기본이념 자주성, 민주적·공정한 운영 ○ 시민공익법인의 정의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 법률로서 설립된 법인 ①사원(회원)수가 10인 이상 ②기본기금이 50만엔 이상 ③사원 과반수가 동일한 도도부현내에 거주 ④임원 2/3 이상이 동일한 도도부현내에 거주 ⑤주된 활동지역이 동일한 도도부현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활동의 정의 시민활동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닌 자원봉사활동을 필두로 하는 시민의 자주적인 사회참가활동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 시정촌, 도도부현, 국내 또는 해외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증진/보건의료의 촉진/교육의 촉진/산업진흥/문화의 향상/예술진흥/스포츠진흥/환경보전/재해의 구조/범죄방지/인권옹호/평화촉진/국제교류/국제협력/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 시민활동의 기본이념 자주성, 비영리,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참가의 자유 ○ 시민활동법인의 요건 등 일정수 이상의 인적요건, 종교단체 및 정치단체의 제외, 선거활동등 및 종교활동금지, 비영리, 임원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지불금지, 수입의 적정사용

<p>법인 설립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된 창립 총회개최후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기타 주무부처령이 정하는 서류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음 · 도도부현지사는 정의 및 본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설립을 3개월 이내에 인가하여야 함 · 인가후 법인은 6개월 이내에 등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기인은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설립결의록 등을 도도부현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음 · 도도부현은 정관의 내용 등이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3월 이내에 인증결정을 하여야 함 · 인증후 일정기간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 법인으로 됨 · 법인은 종된 사무소를 두는 경우 일정사항을 당해 도도부현에 신고함
<p>행정 감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지사는 시민공익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년 이상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현저히 운영의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 조치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감독의 목적을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인가취소를 할 수 있음 · 도도부현지사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에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도부현은 사업보고등의 보고가 3년간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배하고 그 운영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발함 ·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폐해를 방지하기 불가능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 종된 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도도부현은 소관청의 동의하에 필요한 보고를 징수하거나 조사할 수 있음
<p>세제 우대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에 제출된 법안에는 법인법이므로 세제개정에 관한 부분은 상세히 규정하지 않음 · 세제에 관한 부분은 법인세법 등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별도제출 · 골자는 시민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인격없는 사단과 동등하게 하고, 특정 공익증진법인자격을 취득을 간소하게 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활동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하며, 수익사업은 과세 · 특히 공익성이 높은 전적으로 공익목적의 것에 대해 도도부현지사가 일정기간의 활동업적외에 소요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특정시민활동법인으로 하여 민법법인과 같은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함과 아울러 민법법인과 같은 감독하에 둠 · 공익의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함
<p>정보 공개 활동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임원보수를 도도부현지사에게 제출 · 시민공익법인센터에 임의가입 (정보공개가능) 	<p>매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도도부현에 신고, 공개함</p>

현재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NPO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매우 불만이 많다. 특히 문제는 금후 NPO가 어떠한 사회적인 역할을 거둘 것인가에 관한 비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즉, NPO에 관한 위치를 분명히하지 않은채 자원봉사 지원을 위하거나 재정적으로 열악한 市民團體가 있다는 시점에서만 NPO법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여3당의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한다.³¹⁾

○ 市民活動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①회원명부 등의 행정제출의무로 인하여 시민활동단체의 회원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이점은 시민활동법인의 회원모집을 곤란하게 한다.

②예산에 따라 회계를 행하는 것이나 복식부기로 회계를 행하는 것, 1년간의 모든 회원의 명부를 만드는 것, 구분정리를 행하는 것 등 법인이 사무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어 법인의 비용을 높인다.

③시민활동의 분야가 11개 항목에 한정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의 시민활동이 발전하기 어렵다.

④행정의 감독이 있기 때문에 법인격의 취득을 둘러싸고 행정에게 유리한 시민활동과 그렇지 아니한 활동의 선별이 발생한다. 그 점은 사회에 있어서 시민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낳게된다. 그 결과 조성금이나 행정과의 위탁관계에서 행정에게 유리한 시민활동법인이 우선하게 될 뿐 아니라 시민활동단체에게 자율적인 발전의 길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

○ 官僚社會를 조장한다.

①행정의 감독관리가 다수이기 때문에 시민활동에의 새로운 규제가 생긴다. 이것은 금일의 규제완화의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②규제강화에 의해 행정의 업무가 증가하고 행정조직의 무용한 비대화가 생긴다. 이것은 행정개혁에 반한다.

③시민활동단체에 대해서 행정의 감독한다는 점에서 시민활동에 있어서 자기책임이 발달하기 어렵다.

④행정에게 유리한 시민활동이 보다 관리하기 쉬운 법인으로서 조직화되므로 시민활동의 행정의 하청화가 촉진될 위험성이 있다.

31) 자세한 내용은 境分萬純, 「市民活動促進法案の今秋成立を目指して」, 法學セミナ 1997. 11., 1面 이하 및 賴晋一, 「NPO法案」, 立法と調査 1997.1., 40面 이하 참조.

○市民活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구비되지 않는다.

①기부금이 면세되는 제도가 완전히 없다.

②행정을 감시하는 활동이나 시민활동의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 피해자의 구원 활동 등 금일의 사회에서 중요한 시민활동의 분야가 완전히 빠져있다.

③우편요금의 우대 등 시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IV. 우리나라에서의 NPO制度的의 활성화를 위한 課題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운동은 1987년의 민주화운동이후 본격화하여 이제는 정부 권력과 자본권력을 견제하는 「제3의 권력」으로서 신뢰받는 운동단체로 자리잡고 있다.³²⁾ 이러한 시민단체의 급속한 성장은 주택문제로부터 경제정의, 환경, 사고육비, 노사관계, 농촌문제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합리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깊어진 시민의식, 넓어진 시민운동」이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사회에 있어서 이들 市民團體의 역할은 제도개혁, 부정부패와 부조리감시, 종합민원실 운영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금융과 부동산실명제도입등 경제정의를 위한 장치, 최근에 제정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1995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비롯한 선거부정의 감시활동 등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대표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시화호오염문제,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반입반대운동은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또 다른 재야운동으로 인식하였던 정부도 시민단체들을 건전한 세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정방지위원회등 각종 정부의 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이제는 당연시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시민단체에게 의견과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제 시민단체들은 국가정책의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지역조직을 통한 현장중심의 문제제기로 다양하고 유연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994년에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법적용이 제외되는 단체의 종류와 성격, 이른바 관변단체로 분류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3개 법률의 폐지와 관련하여 여

32) 우리 사회의 市民運動에 관한 내용은 김일기, 「한국시민운동에 관한 소고」, 정치논총(건국대) 제31집, 1996, 101面 이하 참조.

야의 의견차이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NPO제도는 없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나 활동상의 전모를 엿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NPO를 기존의 공익법인을 제외한 시민활동단체(임의단체)로 파악하는 경향도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任意團體를 중심으로 한 NPO의 전모는 대체로 설립목적이 다양하고 비교적 신생단체가 많다. 활동분야는 사회복지분야를 필두로 환경, 문화, 교육, 건강, 스포츠, 국제협력, 소비생활 등 매우 다양하며 활동형태도 자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실천활동을 하는 것, 행정이나 기업 또는 사회전체에 대한 조언·감시를 행하는 것, 전문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행하는 것 등 다양하게 걸쳐있다. 재정규모의 면에서도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수입원은 주로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유급직원을 둔 단체는 별로 없으며, 자원봉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의 NPO는 현재 그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여 아직 조직력이나 지금면에서 취약하다. 그리하여 21세기에 있어서 우리의 NPO가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1. NPO에 대한 시각의 定立

NPO를 둘러싼 문제는 아직 논점이 정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NPO를 지지하는 제도라 하더라도 NPO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제도는 완전히 다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NPO問題를 검토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할 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NPO가 사회에서 거두는 기능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원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의 행정의 기능과 관련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NPO를 둘러싼 사회환경·제도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NPO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도 하다. NPO가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거두고 있는가에 관한 이해는 NPO를 支持하는 제도를 논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행정과의 관계에서 NPO가 거두어야 할 역할에 관한 주장은 다음의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첫째, NPO를 行政의 代替 또는 下請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공공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행정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게 된다. 또한 원리적으로 행

정이 책임을 지도록 된다. 따라서 NPO의 활동은 행정이 하여야 할 공공서비스이
나 행정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NPO의 운
영이나 사업내용은 행정이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둘째, NPO를 행정의 補完的 機能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공공서비스
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그것은
NPO에 보완하여 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과 민간의 역할분담론이 기본적으
로 이 입장이다. 이는 행정의 측면에서 NPO의 필요성을 보는 입장이다.

셋째, NPO를 행정에서 독립된 非營利이나 獨自的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기관으로 보는 입장이다. 물론 행정의 보완이나 대체, 행정과의 협력도 도모하
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범주와는 관계없는 다양한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는 것
이 NPO라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측에서 NPO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NPO를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는 사회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 행정이 공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행정주도의 사회를 지속할 것
인가 아니면 사회서비스에서도 기본적으로는 市民이 그 책임을 담당하는 것을 우
선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이 필요하다. NPO를 입법화하는 경우의 쟁점도 확실히
이 사회선택에 있어서의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행정측으로는 재정위기나 복지분야
에 있어서 비용삭감·인력확보라는 행정측의 사정에서 새로운 자원봉사단체나 시
민활동단체를 행정의 보완적 이용을 위한 형태로 정비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NPO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편 시민측은 행정주도가 아닌 시민의 요구를 보
다 계속적·전문적으로 정치·사회에 반영시킬 수 있고 사회참가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시민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NPO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러한 미래의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행정측과 시민측의 논리가 혼재되
어있는 것이 NPO제도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향후 우리 사회에 있어서 NPO가 어떻게 발전하여야 할 것
이며, 그를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사회선택의
문제와 관련되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우리의 시민의식의 향
상과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NPO를 행정의 보완이나 대
체, 행정과의 협력도 도모하나 기본적으로는 행정의 범주와는 관계없는 행정으로
부터 독립하여 비영리적·자발적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또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2. 市民團體內部的 문제

우리의 NPO는 외국에 비하여 會員數도 적고 예산규모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零細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NPO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資金과 人力이 필요하다. 자금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나, 결국은 회원의 회비수입이 중요한 財源이 된다. 따라서 일반시민에 대하여 회원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활동의 폭을 넓히는 것일 뿐 아니라 자금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NPO가 단순한 閉鎖的인 중간집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고 참가할 수 있는 조직일 필요가 있다. 또한 NPO가 일과성의 시민운동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組織力, 企劃力 내지 조직의 經營力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시민에 대해 정보를 발산하고 또한 NPO상호간의 연대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3. 一般市民側의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자와 경험자는 적은 편이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아직 參加型 市民社會로 성숙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이러한 일반시민을 NPO의 주체자로서 참가시키기 위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못한 행정과 시민단체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시민을 NPO의 主體로서 부각하는 것은 행정의 수중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NPO자신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민들은 NPO가 국제기관 내지 각국정부에 대신하는 역할을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존재를 제시하고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 NPO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이 의식을 변혁하여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발언하고 대등한 파트너쉽하에서 협조하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4. NPO法の 立法方向

위와 같은 NPO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논의하에서 바람직한 NPO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개시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활동단체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 요청이 있고 그러한 활동

을 한층 촉진하기 위한 조건정비를 하는 것은 立法者의 責務라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에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폐기된 바 있는 여야당의 「民間運動支援에 관한法律案」을 토대로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法制의 기본방향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의 NPO의 위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NPO법의 제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종래형의 사회체제를 존속하려는 입장에서 NPO를 行政에 이바지하는 단체로 규정하여 公益法人과 같이 견실한 조직을 가지고 확고한 행정시책으로 위치하기 위해서 NPO를 법제화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이 자립한 비영리사회서비스 차원에서 당면한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참가규제를 완화하려는 입장에서 NPO법제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시각이 필요하다.

선진국가들에 비해 官尊民卑의 풍조가 강하고 행정의 기능이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발적인 사회참가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경우 자칫하면 행정에 대한 보완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되기 쉽다. 그러나 최근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자각하고 다양성의 실현 및 사회의 진보와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市民團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강조되고 있고,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면서 행정이나 기업이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나아가 행정이나 기업보다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기능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국민이 행정주도형의 정책에 따른 사회가 아니라 행정 및 국민이 의식을 변혁하여 NPO가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발언하고 대등한 파트너쉽하에서 협조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으로부터 독립성과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선구성, 진취성 및 개척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NPO의 定義

NPO의 보편적인 기준은 대체로 非政府性, 非營利性 및 自發性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구비한 NPO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매우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입법화하는 경우에 어떠한 단체를 NPO법제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현행 제도상 NPO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特別法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NPO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特別法人體와 순수 민간운동단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4년에 여야가 제출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당안(민자당)	야당안(민주당)
<p>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민간운동단체”라 함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을 갖춘 단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에서 규정한 민간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2.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3. 비영리·비정치성 단체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단체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학술의 조사·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p>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민간운동단체”라 함은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설립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 단체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 및 그 하부조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한 단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민간운동의 기본방향)에서 규정한 민간운동을 수행하는 단체 2.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3. 비영리 단체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단체에서 배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 또는 특정인을 지원하는 단체 3. 단체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위 법안에 대하여 당시 민간단체 및 복지관련단체에서는 여당안에서 규정한 민간단체의 범위 가운데 “非政治性”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을 청원하였다. 그 이유로서 비정치성과 비정당성은 차이가 있으며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얼마든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자칫 정치성단체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야당안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를 제외한 것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특정명목으로 조금이라도 예산지원을 받게되면 민간단체들은 민간운동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³³⁾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다종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 분야도 사회복지, 환경보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등 매우 다기에 걸쳐있으며, 활동범위도 우리 사회가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점차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사회참가활동이 촉진되면 될수록 이들 市民團體의 활동은 점차 활발해질 것이며, 다양한 단체가 결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어떠한 단체를 지원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법률에서 구태여 정의한다면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NPO의 보편적 기준인 비정부성, 비영리성, 자발성이라는 요건을 구비한 단체를 상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①非政府性이란 정부조직으로부터 자립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②非營利性이란 그 활동자금 등을 적정한 보수의 지불등을 제외하고 그 임원이나 회원에게 분배되지 않으며 또한 그 시설 등을 그 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③自發性이란 그 활동자금이 그 일부라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발적인 역무의 제공으로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非政治性”이라는 성격이 문제되나, 오늘날 국경을 초월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NPO야말로 국민국가에 대신하여 문제해결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고 투표, 정당 등에 대한 충성 등 전통적인 정치참가의 구조가 형해화하고 있는 가운데 NPO는 정치의사를 통합하는 새로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시민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의 해결에 주력하며 그 내용도 형태도 다기에 걸쳐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도 당연하다고 하여 그 정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반면 정치상의 주의나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단체를 제외하여 순수한 민간운동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든 NPO의 보편적 기준에 의한다면 특정정당 또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단체는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⁴⁾

33) 한편 위 여야당의 법률안에서 규정한 “社會團體申告에관한法律”은 1997년 3월 7일 법률제 5304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폐지전의 동법 제2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되는 단체,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 종교단체, 학술의 연구·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친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인, 체육분야 등의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회원수가 50인 이하인 단체 등을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4)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공익단체의 법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하여 政治活動과 그 制限問題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영국에서는 공익단체의

그리고 민간운동단체의 중요한 요건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公益性”이라 할 수 있다. 공익성의 관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일의적이지 않다. 또한 그 공익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公益判斷의 기준을 행정측에 맡기는 경우 자칫하면 행정에 의한 시민활동의 관리가 될 우려도 있다. 결국 공익성은 시민활동의 자유에 당연히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자주적이며 비영리적이며 참가의 자유가 보장되면 공익성을 가진 시민단체로서 인지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민간운동단체란 “민간비영리활동의 일부로서 특히 다수 시민의 자주적인 참가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자립적인 공익활동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NPO에 대한 法人格의 취득

현재 우리의 법제상 NPO가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NPO도 법인화되지 않은 任意團體인 경우가 많다. NPO가 법인격을 취득할 경우의 장점으로서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관리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신용도가 증가하며 기부·보조금 등 공적지원을 받기 쉬우며, 조직의 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경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기 쉽다는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NPO와 같은 비영리시민단체가 법인으로 하려는 경우 민법상 主務官廳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설립요건이 까다로우며, 또한 행정은 자기의 이익과 결부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서 허가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않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法人化하더라도 그 활동의 자주성이 저해되고 활동에 행정의 간섭을 초래할

목적은 “公益”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익이라는 요소가 공익단체의 법적지위의 필요조건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공익단체만이 명백하고 명확하게 운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公益團體는 정당에 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독자적으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사회적 활동의 영역과 정치활동의 영역의 중복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 공익단체가 제시하는 공익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政治的인 것과 전혀 관련없이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정치활동이란 무엇인가” “공익단체에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어디 까지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공익단체위원회는 공익단체의 정치활동에 관한 일련의 判例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을 정리하여 1981년에 “公益團體의 정치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Charity Commissioners for England and Wales, Political Activities by Charities, 1989.9., 1993.7. 개정)”을 공포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요약하면 공익단체는 원칙으로 그 주된 목적으로서 정치목적에 지향하여 활동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공익단체의 주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수적인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정치활동의 내용, 수단은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인 범위내에 그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능성이 많다.³⁵⁾ 또한 “公益法人의設立및運營에관한法律”도 있으나, 이 법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목적을 지닌 시민단체의 전부에 부응할 수 없게 되어있다.³⁶⁾

따라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우리의 시민단체들 가운데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는 많지 않을 것이며, 설사 法定要件을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행정의 감독으로 인하여 법인화를 추진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民法自體의 근본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그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 이 문제는 민법상의 법인제도를 유지하면서 NPO와 같은 특정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활동내용의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法人制度를 규정하면서도 다수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을 양산하는 것은 법률의 구조상의 불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개혁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4) NPO에 대한 支援

또 하나의 제도적 문제로서 NPO에 대한 공적 내지 사적인 지원제도의 문제이다. NPO의 활동에는 자금이 필요하며 활동에 대한 자금원조가 충분하게 되는 것

35)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재 日本에서도 NPO의 법인화문제가 커다란 법리적인 쟁점으로 되고 있다. 法人化를 희망하는 시민단체가 적지 않으나, 실제로 그 대부분은 임의단체로 되어있다. 그 이유는 민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民法에 의한 공익법인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제이기 때문에 행정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감독에 복종하며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직권으로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시민단체들은 설립요건의 엄격화와 행정의 지나친 감독으로 인하여 법인화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하여 시민단체의 법인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익법인보다도 간소한 절차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한편 설립후에도 행정의 감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NPO立法化를 추진하고 있다.

36)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그 적용대상법인을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①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금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②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③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④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⑤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우리의 市民團體는 자금면에 있어서 영세성과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조치(보조금교부, 세제우대조치 등)가 법제면에서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1994년의 여야당이 제출한 “민간운동지원에관한법률안”에서도 민간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교부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교부제도, 조세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제도는 시민단체가 그 자주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이 단기간의 원조라면 계속하여 활동할 수 없으며, 그 용도가 한정되거나 사업완료후 자금지출이 되거나 상세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 등은 활동의 폭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支援方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NPO에 대한 지원은 그 주체성을 존중하고 자발적인 활동의 계속적·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NPO의 활동이 외부로부터 지나친 간섭을 받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활동에 수반한 책임은 NPO자신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NPO의 공익성으로부터 그 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정비에 관한 공적 지원이 행해지는 것은 중요하나 이 경우 NPO의 자발성, 주체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지원이어야 한다.

셋째, NPO는 본래 재정면에 있어서도 민간자금 및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기본이나, 당면은 공적자금을 포함 민간재원, 자주재원, 공적자금이 적절히 조화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NPO의 지원은 그 조직활동, 개척성을 손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단체의 자율적인 모금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모금활동을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그 시민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아울러 시민단체의 활성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현재 민간단체에 의한 모금활동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사실상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NPO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문제점을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³⁷⁾

37) 이 문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서경석, 「시민운동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련법의 개정방향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민간운동지원법을 중심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이러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그 情報公開을 철저화하고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남용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들 제도적 장치가 시민단체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하는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위한 과제와 방향(한국시민단체협의회 주최 세미나자료), 1997.10.27. 34面 이하 참조.

〈參考資料〉

I. 日本의 市民團體支援法案

- 市民公益活動을 행하는 團體에 대한 法人格부여 등에 관한 法律案 (新進黨)
- 市民活動促進法案(自民黨)

II. 英國의 1993년 Charity(공익단체)法(법률제10호)

III. 프랑스의 非營利社團契約에 관한 法律(1901.7.1.)

I. 日本의 市民團體支援法案

○ 市民公益活動을 행하는 團體에 대한 法人格부여 등에 관한 法律案(新進黨)

第1章 總 則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지역사회에서 그 주민이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시민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를 정비함과 아울러 시민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나아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각과 책임으로 공익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특색있는 발전에 공헌하는 다원적인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이 법률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수행되는 시민공익활동의 발전이 개성이 풍부하고 활력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임에 비추어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존중하여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시민공익활동이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는 주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참가를 기본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민주적이며 공정한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이 법률에서 「시민공익활동」이란 주민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교육 또는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의 공헌, 환경보전 또는 국제적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그 활동에 관한 연락 또는 조성을 수행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이 법률에서 「시민공익법인」은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 사원의 수가 10인이상일 것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기금으로서 보유하는 재산가액이 50만圓이상일 것

3. 사원의 과반수가 당해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일 것
4. 임원의 3분의 2이상이 당해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일 것
5. 주로 활동하는 구역이 당해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구역에 있을 것

제4조(명칭사용제한) 시민공익법인이외의 자는 그 명칭중에 「시민공익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수익사업) ① 시민공익법인은 그 수행하는 시민공익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당해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시민공익법인에 수행하는 시민공익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회계로부터 구분하여 특별회계로서 경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소) 시민공익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7조(등기) ① 시민공익법인은 政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등기한 사항은 등기소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3조와 제44조의 규정은 시민공익법인에게 준용한다.

第2章 市民公益法人의 設立

제9조(발기인) 시민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이 되는 자 10인이상이 발기인이어야 한다.

제10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및 발기인명부를 작성하여 회의일시와 장소와 함께 공고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2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승인, 사업계획의 설정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로 하여야 한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전항의 정관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사원자격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창립총회의 議事は 사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회의개최일까지 발기인에 대해 사원이 되는 뜻을 제출한 자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이상

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정관기재사항) ①정관에는 적어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7.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기금으로서 보유하는 재산 기타 자산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전항제10호의 사항중 잔여재산이 귀속되어야 할 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자는 동일 또는 유사목적은 가지는 다른 시민공익법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법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가신청) ①발기인은 창립총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主務省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 기타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임원 및 사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면 기타 제3조제2항각호에 나열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은 당해都道府縣知事の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민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가기준) 都道府縣知事は 전조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시민공익법인이 제3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가기간) ①都道府縣知事は 제12조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를 수리한 날부터 3월이내에 발기인에 대해 서면으로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都道府縣知事が 전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제12조제1항의 인가(이하 「설립인가」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기인은 당해都道府縣知事に 대해 인가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都道府縣知事が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제출을 요구한 날부터 그 보고서가 당해都道府縣知事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발기인이 불인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취소판결을 한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에 설립인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항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인가의 실효) 설립인가는 당해설립인가가 있는 날부터 6월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사무인계) 발기인은 설립인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7조(성립시기) 시민공익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8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1조제1항(법인설립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은 시민공익법인의 설립에 준용한다.

第3章 市民公益法人의 管理

제19조(임원의 정수) 시민공익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모든 시민공익법인의 업무에 대해 시민공익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결정) 시민공익법인의 업무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2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의 감사
2. 시민공익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3. 전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시민공익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부정

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사원총회에 보고

4.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에 대해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
5.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 또는 시민공익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

제23조(감사의 겸직금지) 감사는 이사 또는 시민공익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벌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기까지의 자
4. 전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기까지의 자
5.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가 취소된 시민공익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당시의 임원으로서 설립인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5조(임원의 친족등의 배제) 임원중 각 임원에 대해 당해임원과 그 배우자 및 3친등이내의 친족이 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임원의 선거등) ①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사원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사원이 되고자하는 자중에서 선출한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설립당시의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임원은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임원의 결원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 그 정관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자가 결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충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재임은 허용된다.

제29조(임원변경의 신고등) 시민공익법인은 그 임원 또는 사원의 성명,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이 있는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임원은 2주이내, 사원은 1월이내에 변경사항을 당해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총사원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정관의 변경(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은 그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の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가에 준용한다.

⑤시민공익법인은 제3항의 주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계된 정관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에 관계된 사항을 당해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연도) ①시민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단서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은 1년으로 하여야 한다.

③시민공익법인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성립일부터 개시하며 그 후 최초의 3월 31일에 종료한다. 다만, 동항단서의 경우 최초의 회계연도는 그 성립일부터 개시하며 그 후 최초의 회계연도의 말일에 종료한다.

제32조(사업보고서등의 비치, 제출 및 열람) ①시민공익법인은 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손익계산서) 및 임원(이에 준하는 자로서 주무성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각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전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민공익법인은 매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서류의 사본을 당해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사에 대해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서류중 회계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이에 따라 작성한다.

제33조(기본기금의 보유) 시민공익법인은 주무성령이 정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일정한 재산을 기본기금으로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34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4조 내지 제57조,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시민공익법인의 관리에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기부행위」는 「정관」으로 한다.

第4章 市民公益法人의 解散과 合併

제35조(해산사유) ①시민공익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목적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의 불능
3. 사원총회의 결의
4. 합병
5. 파산
6.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 취소

②전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그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の 인정을, 동항제3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당해都道府縣知事の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정과 인가에 준용한다.

④청산인은 시민공익법인이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된 시민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に 대한 청산완료의 신고시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에 잔여재산이 귀속되어야 할 자에 관한 규정이 없는 때 또는 정관이 정하는 잔여재산이 귀속되어야 할 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된 시민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당해해산된 시민공익법인의 목적과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시민공익법인(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당해해산된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동일한 都道府縣구역에 있는 자에 한한다) 중에서 당해 都道府縣知事が 선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은 해산된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都道府縣에 귀속한다.

제37조(합병) 시민공익법인은 다른 시민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38조(합병절차) ①시민공익법인의 합병은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총사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시민공익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都道府縣知事の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전항의 인가를 한 都道府縣知事は 당해합병으로 소멸하는 시민공익법인이 다른 都道府縣知事の 설립인가(당해시민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설립된 자인 경우에는 당해합병과 관련한 동항의 인가. 제46조 내지 제48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인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시민공익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게 되는 뜻을 당해 다른 都道府縣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인가에 준용한다.

제39조 ①시민공익법인은 전조제3항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그 인가통지가 있는 날(전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조제3항의 인가가 있을 것으로 보게된 때에는 당해인가가 있을 것으로 보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민공익법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진술할 것을 공고하고, 판명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하회할 수 없다.

제40조 ①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민공익법인은 이를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제41조 합병으로 시민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시민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시민공익법인에서 선임된 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시민공익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시민

공익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시민공익법인의 일체의 권리의무(당해시민공익법인이 그 사업에 관해 행정청의 인가 기타 처분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3조(합병의 시기) 시민공익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시민공익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시민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登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생략

第5章 市民公益法人에 대한 監督

제45조(보고 및 검사) ①都道府縣知事は 당해都道府縣의 구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공익법인이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정관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시민공익법인에 대해 그 업무 또는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시민공익법인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개선명령등) ①都道府縣知事は 설립허가를 받은 시민공익법인이 제3조제2항의 요건에 미비되게 된 때 기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히 적정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시민공익법인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민공익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都道府縣知事の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당해都道府縣知事は 당해시민공익법인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③都道府縣知事は 전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려는 경우 당해시민공익법인에게 당해都道府縣知事が 지정한 직원에 대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민공익법인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변명을 하여야 할 일시, 장소 및 권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통지를 받은 시민공익법인은 대리인을 출두하게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명을 청구한 자는 청구서 및 당해권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항의 都道府縣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都道府縣知事は 다른 都道府縣知事の 설립인가를 받은 시민공익법인으로서 당해 都道府縣知事の 구역내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례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제2항의 규정례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都道府縣知事は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시민공익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都道府縣知事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수익사업의 정지) 都道府縣知事は 설립인가를 받은 시민공익법인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시민공익법인에 대해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시민공익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수익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2. 당해시민공익법인이 당해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당해시민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시민공익활동에 관련된 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3. 당해수익사업의 계속이 당해시민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시민공익활동에 관련된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48조(설립인가의 취소) ①都道府縣知事は 설립인가를 받은 시민공익법인이 제4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2년이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해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의 취소와 관련한 청문기일에서 심리는 당해시민공익법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로 하여야 한다.

第6章 市民公益法人센터

제49조(시민공익법인센터) ①시민공익법인은 전국을 단위로 시민공익법인을 회원으로 하고, 그 명칭중 시민공익법인센터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시민공익법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국을 통하여 1개로 한다.

제50조(명칭사용제한) 센터이외의 자는 그 명칭중에 「시민공익법인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1조(가입) 센터는 시민공익법인이 센터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있어 부당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52조(센터의 업무) ①센터는 시민공익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연락, 조언 및 지도
2. 회원인 시민공익법인으로부터 제출된 제32조제1항의 서류사본의 관리와 내용공개

②센터는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회원명부의 열람) 센터는 회원명부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第7章 雜 則

제54조(세제상의 우대조치등) ①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시민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공익법인이 일반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등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시민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는 홍보활동등을 통하여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6조(주무성령) 이 법률에서 주무성령은 시민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이 발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57조(벌칙) 제46조제2항 내지 제6항(동조제2항의 규정례에 의한 부분에 한한다)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공익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20만엔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령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실등기를 한 때
2. 제8조에 준용하는 민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목록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를 한 때
3. 제29조 또는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때
4.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를 한 때
5.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때
6.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의 열람을 거부한 때
7.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작성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를 한 때
8. 제39조제2항 또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9. 제44조에 준용하는 민법 제70조제2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은 때
10. 제44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79조제1항 또는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공고를 한 때

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명부열람을 거부한 자

附 則

- 1.(시행일) 이 법률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검토) 이 법률에 의한 시민공익법인제도의 실시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제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제도의 전반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3.(명칭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 4.(허가등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 市民活動促進法案(自民黨)

第1章 總 則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시민활동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으로 시민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률에서 「시민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공익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통상 요하는 비용을 상회하는 대가를 받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의 증진
2. 보건의료의 추진
3. 교육의 추진
4. 문화향상
5. 예술진흥
6. 스포츠진흥
7. 환경보전
8. 재난구조
9. 범죄방지
10. 인권옹호
11. 평화추진
12. 국제교류
13. 국제협력
14. 교통안전
15. 기타 공익에 관한 것

②이 법률에서 「시민활동단체」란 주로 시민활동을 수행하는 사단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률에서 「시민활동법인」이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第2章 市民活動法人

제1절 통 칙

제3조(원칙) 시민활동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특정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2.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3. 종교의 교의를 전파하거나 의식행사를 하며 신자를 교화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4.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추진, 지지하거나 이에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5. 특정정당을 위하여 이용되지 아니할 것
6. 특정 공직의 후보자,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당을 추천하지 아니하고 지지하지 아니하며 그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

제4조(명칭사용제한) 시민활동법인이외의 자는 그 명칭중 「시민활동법인」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주소) 시민활동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등기) ① 시민활동법인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7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시민활동법인에게 준용한다.

제8조(소관청) 시민활동법인의 소관청은 ○○○로 한다.

제2절 설 립

제9조(설립의 認證) ① 시민활동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소관청의 설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정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 ① 시민활동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업의 종류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0호의 사항중 잔여재산이 귀속되어야 할 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자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시민활동법인 또는 민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의 기준등) ①소관청은 제9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조제1항의 설립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설립을 인증하여야 한다.

1. 시민활동단체일 것
2. 10인이상의 회원을 가질 것
3. 제3조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4. 정관의 내용 및 설립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소관청은 제9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3월이내에 인증 또는 인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성립시기) 시민활동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51조제1항(법인설립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의 규정은 시민활동법인에 준용한다.

제3절 관 리

제14조(임원의 정수 및 임기) ①시민활동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 3인이상, 감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임은 허용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활동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률 또는 폭력단원에의한부당한행위의방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형법 제204조, 제206조, 제208조, 제208조의2, 제222조 또는 제247조의 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인증이 취소된 시민활동법인의 설립인증취소 당시의 임원으로서 설립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친족등의 배제) 임원중 각 임원에 대해 그 배우자 또는 3친등이상의 친족이 1인을 초과하거나 당해임원, 그 배우자 및 3친등이내의 친족이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사의 대표권) 이사는 모든 시민활동법인의 사무에 대해 시민활동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결정) 시민활동법인의 사무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사의 사무집행상황의 감사
2. 시민활동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
3. 전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시민활동법인의 사무 또는 재산에 관해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총회 또는 소관청에 보고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
5. 이사의 사무집행의 상황 또는 시민활동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

제20조(감사의 겸직금지) 감사는 이사 또는 시민활동법인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1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총회원의 2분의 1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관의 변경(정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은 소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준용한다.

⑤시민활동법인은 제3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보고서등의 비치등) ①시민활동법인은 매년초 3월이내(사업연도를 둔 때에는 매사업연도의 종료후 3월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민활동법인의 이해관계인이 전항에 열거한 서류(설립후 당해서류가 작성되기까지의 기간은 설립시의 재산목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는 시민활동법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보고서등의 공개등) ①시민활동법인은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에 규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민법의 준용) 생략

제4절 해산 및 합병

제25조(해산사유) ①시민활동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결의
2.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3. 시민활동에 관련된 사업의 성공불능
4. 회원의 결원
5. 합병
6. 파산
7.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증의 취소

②전항제3호에 의한 해산은 소관청의 인증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된 시민활동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시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에 잔여재산이 귀속되어야 할 자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정관으로 정한 잔여재산이 귀속되어야 할 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인은 소관청의 인증을 받아 그 재산을 국가, 지방공공단체, 시민활동법인 또는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해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7조(합병) 시민활동법인은 다른 시민활동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제28조(합병절차) ①시민활동법인의 합병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의결은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합병은 소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9조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은 전항의 인증에 준용한다.

제29조 ①시민활동법인은 전조제3항의 인증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민활동법인은 전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해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기간내에 의견을 진술할 것을 공고하고, 판명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월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①채권자가 전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시민활동법인은 이를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자에 변제를 할 것을 목적으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제31조 합병으로 시민활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시민활동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각의 시민활동법인에서 선임된 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시민활동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시민활동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시민활동법인의 일체의 권리의무(당해시민활동법인이 그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행정청의 인가 기타 처분에 따라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33조(합병의 시기) 시민활동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시민활동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시민활동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登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민법의 준용) 생략

제5절 감독

제35조(권고 및 검사) ①소관청은 시민활동법인의 사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시민활동법인에 대해 그 사무 또는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당해시민활동법인의 사무소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그 사무 또는 재산 상황,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개선명령) 소관청은 시민활동법인의 사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히 적정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민활동법인이 시민활동단체가 아니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시민활동법인에 대해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설립인증의 취소) 소관청은 시민활동법인이 법령 또는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또는 3년이상 제23조제1항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시민활동법인의 설립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第3章 特定市民活動法人

제38조(특정시민활동법인의 인정) ①시민활동법인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에 신청하여 특히 공익성이 높은 뜻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소관청은 전항의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신청과 관계된 시민활동법인의 당해신청일전 3년간의 활동실적, 당해신청에 관련한 시민활동법인이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인가등을 심사한 후 그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9조(명칭사용제한) 전조제1항의 인정을 받은 시민활동법인(이하 「특정시민활동법인」이라 한다)이외의 자는 그 명칭중에 「특정시민활동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인정의 유효기간등) ①제38조제1항의 인정은 3년마다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전항의 인정갱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③제38조제1항의 인정은 당해인정에 관건한 시민활동법인이 합병하거나 당해인정에 관련된 시민활동법인이 그 목적 또는 사업의 변경을 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第4章 罰 則

제41조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만엔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시민활동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시민활동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시민활동법인에 대해서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제44조 생략

附 則

이 법률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II. 英國의 Charity(公益團體)法 (1993년 법률제10호)

第1章 公益團體委員會 및 公益團體를 위한 管財官

제1조(공익단체위원회) ①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익단체위원회는 계속 존속하며 당분간 효력을 가지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무외에 이 법률에서 부여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②부칙 1의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와 위원회, 그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권한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양호한 운용방법의 진전을 촉진하고 공익단체관리자(charity trustees)에게 공익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을 하며, 그 남용을 조사·검사함으로써 공익신탁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일반적 직무를 수행한다.

④위원회의 일반적 목적이란 어떠한 공익단체의 경우라도 (목적의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탁에 의해 지시된 요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당해 공익단체의 사업을 촉진하며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행동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스스로 공익단체의 관리에 종사하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위원회는 각연도종료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연도중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하며, 국무장관은 양원에 당해보고서를 각 1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공익단체를 위한 관재관) ①이 법률에서 정하는 공익신탁수탁자로서 활동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 공익단체의 관재관(official Custodian, 이 법률에서 관재관이라 한다)은 계속 존속한다. 관재관은 그 이름으로 영속적인 승계성을 가지며 공적으로 또한 재판상 인정된 공인인장을 사용하는 단독법인이 된다.

②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 임명할 수 있는 위원회의 관리직을 관재관으로 한다.

③관재관은 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일반적 내지 특별한 지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신탁수탁자로서 관재관에게 변제되거나 관재관이 회수한 것을 제외하고) 관재관이 부담한 비용은 위원회가 지불한다.

④위원회의 관리직에 대해 또는 위원회의 관리직이 수행하여야 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은 관재관의 관리직이 결원 또는 기타 경우에 관재관을 대행하도록 위원회에 의해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히 수권된 위원회의 관리자가, 관리자에 대해 또는 관리자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⑤관재관은 자산의 손실 또는 유용에 관하여 그것이 자기 또는 자기의 대리를 하는 자의 의도적인 부작위 내지 해태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단체에 대해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정리공채기금(Consolidated Fund)은 그 부작위 내지 해태를 이유로 관재관이 책임을 지는 금액을 공익단체에 상환할 책임을 진다.

⑥관재관은 재무부(Treasury)가 지시하는 계산서와 장부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재무부가 지시하는 형식, 방법 및 시기에 계산서를 작성한다.

⑦전항에 의해 작성된 계산서는 회계검사원장(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이 검사하며 인증한다. 또한 위원회가 국무장관에 대해 어느 연도에 관해서도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에는 당해연중 또는 당해연도로 만료하는 기간에 관하여 전항에 따라 작성된 계산서와 당해계산서에 관한 회계검사원장의 인증서 및 보고서의 등본을 포함한다.

第2章 公益團體의 登錄과 名稱

제3조(공익단체등록부)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유지되는 공익단체등록부를 계속 보유한다.

②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공익단체는 등록부에 등록된다. (제5항a호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을 제외한) 공익단체는 당해공익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시에 제외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등록부에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익단체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등록부로부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a)각등록 공익단체의 명칭

(b)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각공익단체의 기타 특정사항 및 당해공익단체에 관한 기타 정보

④위원회가 이미 공익단체가 아니라고 판정한 기관은 말소의 이유가 그 목적 또는 신탁상의 변경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변경일에 등록부에서 말소의 효력을 발생한다.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활동하지 아니하는 공익단체도 등록부에서 말소한다.

칙의 등본을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당해규칙으로 등록공익단체에 관해 행해진 변경을 위원회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이미 위원회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등본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문서의 등본을 일부제출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 항에서 문서의 등본을 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되는 경우에도 당해문서가 등록공익단체에 관계하는 때에는 당해문서의 등본은 이 조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제8항에 의한 열람에 제공한다.

⑫국무장관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령으로 당분간 소정의 금액과는 다른 금액으로 제5항(c)호를 수정할 수 있다.

(a)화폐가치의 변동의 결과인 때

(b)제5항(c)호에 규정된 예외범위를 확대하려는 때

⑬제5항(b)호에서 명령 또는 규칙으로 제외된 공익단체란 다음 각호의 공익단체를 말한다.

(a)당분간 영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제외된 공익단체

(b)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국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제외된 종류의 공익단체

⑭이 중에서 「등록예배당」이란 1855년 예배당등록법(Places of Worship Registration Act) 제9조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조물을 의미하며, 이 항에서 적용상 「건조물」에는 건조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제4조(등록의 효과, 등록청구 및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익단체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단체는 등록부의 정정 이외의 모든 목적에 대해 현재 공익단체이거나 공익단체이었다고 확정적으로 추정한다.

②누구라도 공익단체로서의 단체의 등록으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당해단체가 공익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원회가 당해등록을 등록부에 등록하는데 이의를 신청하거나 당해기관을 등록부에서 말소하도록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또는 말소신청을 작성하고 수행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방법에 관해 국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③단체를 공익단체의 등록부에 등재 또는 등재하지 아니하거나 단체를 등록부에서 말소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는 뜻의 위원회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법무총재(Attorney General), 당해단체의 공익단체관리자 내지 공익단체관리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전항에 의한 이의신청 내지 말소신청이 당해결정으로 부인된 자가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단체를 등록부에 등재하거나 단체를 등록부에서 말소하지 하지 아니하는 뜻의

⑤다음의 공익단체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a)부칙 제2에 열거한 공익단체(이 법률에서 「면세공익단체」라 한다)

(b)명령 또는 규칙으로 제외되는 공익단체

(c)다음의 어느 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공익단체로서 전채원에서 수입이 총액으로 연간 1,000파운드이하인 것

1)영속적 기탁재산

2)토지의 사용 또는 점유

등록예배장에 관해서는 공익단체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공익단체의 등록신청에 있어서는 위원회에 대해 당해공익단체의 신탁증서의 등본(또는 신탁이 현존하는 문서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에 관계된 사항) 및 국무장관이 정한 규칙에 규정되거나 위원회가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문서 내지 정보를 제공한다.

⑦다음 각호의 공익단체관리자는 각각 당해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a)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으로부터 제외되고 있지 아니한 공익단체관리자가 등록을 위하여 신청을 하고, 전항에 규정된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b)일정기간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공익단체관리자(또는 최후의 공익단체관리자)가 당해단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당해공익단체의 신탁자 내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신탁에 관련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위원회에 통지하고, 당해신탁의 변경에 관련된 사항과 새로운 신탁증서 내지 신탁증서변경의 등본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⑧(단체가 등록부에서 말소되는 경우에 삭제되는 사항을 등재하는)등록부는 상식적인 시간대에 항상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이 조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등록공익단체의 신탁증서의 등본 내지 초본은 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한 국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보유하고, 상식적인 시간대에 항상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⑨등록부에 포함된 어떠한 정보가 문서형태가 아닌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정보를 상식적인 시간대에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중의 열람에 제공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⑩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8항의 규정은 등록부에 등재되어 당해결정으로 지시된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누구든지 전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외의 자가 작성한 공익단체의 관리규

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고등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당해결정이 유효한가에 대해 위원회가 납득하기 까지 등록부의 등재는 유지되며, 계쟁중이라거나 또는 계쟁중임을 제시하는 직인을 붙인다. 제1항의 적용상 이 항에서 당해단체에 관한 등록사항이 계쟁중인 단체는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단체의 등록 내지 등록부로부터의 말소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당해문제가 제3항에 의한 소송과 관련한 판결로서 결정되더라도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당해판결이 그 후의 법원의 판결(당해소송에 대해 내린 것인가를 불문한다)과 모순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새로이 심사할 수 있으며 당해판결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5조(소규모공익단체이외의 등록공익단체의 공적출판물등에 기재되는 공익단체의 지위) ①이 조는 등록된 공익단체의 전회계연도의 총수입이 5,000파운드를 초과한 경우에 당해등록공익단체에 적용한다.

②이 조가 등록공익단체에 적용되는 경우 다음 문서에서 당해단체가 등록된 공익단체라는 사실을 판독가능한 자체로 영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a)공익단체에 의하거나 공익단체에 대신하여 행해지는 공익단체를 위하여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을 기부로서 모집하는 모든 통지, 광고 기타 문서

(b)공익단체를 대표하여 서명될 것을 예정한 모든 당좌수표, 약속어음, 이서, 수표 및 기타 금전 또는 물품에 관련한 지불·인도지시서

(c)당해공익단체가 인도하는 모든 증서와 그 모든 송장, 영수증 및 신용장

③전항(a)호는 모집이 명시되거나 암시되거나를 불문하며,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이 대가로서 지불되는가를 묻지 아니한다.

④이 조가 적용되는 등록공익단체의 경우 누구든지 제2항(a)호 또는 (c)호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동항에 의해 요구되는 당해공익단체가 등록공익단체라는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문서를 발행하거나 발행을 승인한 자는 죄를 범한 것으로서 배심에 의하지 아니한 약식재판에서 유죄판결로써 표준등급 제3급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전항에서 등록공익단체의 경우 누구든지 제2항(b)호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동항에서 요구되는 당해공익단체가 등록공익단체라는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서명한 자는 죄를 범한 것으로서 배심에 의하지 아니한 약식재판에서 유죄판결로써 표준등급 제3급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소관장관은 명령으로 당해명령으로 지정하는 당분간 제1항에 규정한 금액과

별도의 금액으로 전환하도록 동향을 개정할 수 있다.

제6조(공익단체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공익단체위원회의 권한) 생략

제7조(공익단체가 법인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 효력) 생략

第3章 委員會의 情報入手權限

제8조(조사개시와 관련한 일반적 권한) ①위원회는 적절한 때에 공익단체, 특정공익단체 또는 특정종류의 공익단체에 대해 전반적 또는 특정목적에 위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조사는 면세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조사를 스스로 실시하거나 당해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사목적으로서 위원회 또는 조사를 위해 위원회로부터 임명된 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a)조사대상이 되는 사항이 그에 관해 정보를 가지거나 무리없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당해사항에 관해 보고서 및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당해사항에 관해 그 자에 대한 질문 또는 조사서면으로 하며 당해보고서, 설명서 및 회답서를 법정선언(statutory declaration)으로 확인하는 것

(b)조사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계되는 그 자가 보유 또는 관리하는 문서의 등본을 제공하고 법정선언으로 당해등본을 확인하는 것

(c)지시받은 기일 및 장소에 출두하고 증언 또는 전항에 규정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

④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증인을 선서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당해목적에 위하여 심문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거나 선서를 하는 대신 심문하는 사항이 진실이라는 뜻의 선언서를 작성하여 그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어느 자가 이 조에 의한 조사목적에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문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자진출두한 때에 필요한 경비를 그 자에게 지불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당해경비가 지불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c)호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라 자기의 주거로부터 10마일을 초과한 거리에 있는 장소에 갈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⑥이 조에 의한 조사가 행해진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a)당해조사를 실시한 자의 보고서 또는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당해조사 결과에 관한 기타 설명서를 인쇄·출판하는 것

(b)강구하여야 할 조치에 관해 위원회에 의견표명을 희망하는 자의 주의를 촉구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행해진 어떠한 방법으로 보고서 또는 설명서를 출판하는 것

⑦주(country) 또는 지구(district)의 Council, 런던공동평의회 및 런던구(borough)의 Council은 당해 Council의 지역내의 지방공익단체에 대한 이 조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는 위원회의 지출을 분담할 수 있다.

제9조(문서청구 및 수사기록에 관련한 권한) 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a)공익단체에 관계되며 자기의 직무 또는 관재인의 직무수행에 관계되는 그 보유하는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b)공익단체에 관계되며 자기의 직무 또는 관재인의 직무수행에 관계되는 문서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1)당해문서의 1부 또는 발췌본을 위원회에 제공하는 것

2)(당해문서가 법원 또는 공적 내지 지방기관의 기록 기타 문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문서 그 자체를 위원회의 열람을 위하여 송부하는 것

②위원회의 관리자는 위원회에 의해 인정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위원회 또는 관재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법원 또는 공적등기소 내지 기록소에 있는 기록 기타 문서를 열람하고 당해문서의 등본 또는 발췌본을 작성할 권한을 가진다.

③위원회는 무상으로 제1항에 의해 위원회에 제공된 등본 또는 발췌본을 보관하는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동조에 의해 송부된 문서가 1개 또는 2개이상의 공익단체에게만 관계되고, 당해문서가 그 보관에 관해 수탁자로서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 보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문서를 보관 또는 당해문서를 공익단체관리자 내지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타 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④면세공익단체만에게 관계되는 문서의 보관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에 대해 당해문서중 일부를 송부 또는 그 등본 내지 발췌본을 제공할 것을 제1항에 의해 요구받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선 가독한 형태이외의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해서 열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본 내지 발췌본을 작성하기 위하여 당해정보를 가독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정보 및 위원회에 의한 정보의 개시) ①제2항 및 기타 법률로써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부과된 명확한 제한에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단체 또는 인은 공익단체위원회의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보좌하기 위하여 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해 어떠한 법률에 의하거나 어떠한 법률의 적용상 수령한 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관세 및 소비세청 내지 내국세입청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관(「관련기관」)도 공익단체위원회에 다음의 정보를 개시할 수 있다.

(a)어떠한 목적으로든 공익단체로서 적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관련 기관에 의해 취급되는 단체의 주소 및 명칭

(b)어떠한 목적으로든 어떤 단체가 공익단체로서 적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고 취급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원조를 부여받거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 개시를 행하는 경우에 당해단체의 목적 또는 단체가 설립되거나 규제되는 근거가 된 신탁에 관한 정보

(c)어떠한 목적으로든 공익단체로서 적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취급되는 단체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관련기관이 판단하는 단체에 관한 정보

1)공익단체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여 온 단체

2)공익단체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목적에 기금중 일부분을 운용하거나 운용하여 온 단체

③(생략)

④제5항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의하거나 법령의 적용상 받게 된 정보를 이 조가 규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개시할 수 있다.

(a)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계하는 목적

(b)기관 또는 인의 직무수행을 가능케하거나 보좌할 목적

⑤(생략)

⑥이 조는 다음 기관 및 인에 적용한다.

(a)정부부처(북 아일랜드청을 포함)

(b)지방기관

(c)경찰관

(d)공적 성질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타 기관 또는 인(어떠한 종류의 활동에 관계

하여 규제적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인을 포함)

⑦~⑨(생략)

제11조(위원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의 제공등) ①고의 또는 과실로 위원회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정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a)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해 부과된 요건에 따랐다고 주장하여 제공된 정보

(b)전호에 정한 이외의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한 자가 당해정보가 위원회에 의해 이 법률에 의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의도하거나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②공익단체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문서를 고의로 변경하거나, 비밀로 하거나 은폐 또는 파괴한 자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률에 의한 죄로서 유죄가 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형에 처한다.

(a)약식재판에 의한 유죄판결로 법정한도이하의 벌금

(b)정식기소에 의한 유죄판결로 2년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 내지 병과

④이 조에서 위원회에는 제8조에 의한 조사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한다.

제12조(데이터의 보호) 생략

第4章 財産에 대한 cy-prés原則의 適用, 法院 및 委員會에 의한 公益團體의 補助와 監督

제13조(재산에 대한 cy-prés원칙의 적용) 생략

제14조(알려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증여자의 증여에 관한 cy-prés원칙의 적용) 생략

제15조(특허장에 의해 규율되는 공익단체 또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의거한 공익단체) 생략

제16조(일정목적을 위한 고등법원과의 경합적 관할권) ①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명령으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공익단체의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관할권 및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공익단체의 관리규칙의 제정목적

(b)공익단체관리자 내지 공익신탁수탁자를 임명, 해임 또는 파면하거나 관리자 또는 직원을 파면할 목적

(c) 재산을 귀속시키거나 양도시키거나 또는 어떠한 자에게 재산의 양도 내지 지분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거나 재산의 양도 또는 지분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를 위한 권한을 부여할 목적

② 법원은 공익단체의 관리규칙을 정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에 당해법원이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시에 따라 위원회가 규칙을 작성하거나 결정하도록 명령에 의해 위원회사건을 부탁할 수 있다. 당해명령에는 당해규칙이 전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며 법원의 추가명령없이 위원회의 명령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공익신탁관리자와 당해공익단체에게 불리하게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보지하거나 청구하는 자의 사이의 커몬로상 또는 형평법(Equity)상의 권원을 판정, 결정하거나 위탁, 신탁의 존재 내지 범위에 관한 문제를 판정, 결정하는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의 각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단체에 관하여 이조에 의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a) 공익단체의 신청이 있는 때

(b) 제2조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있는 때

(c) 면세공익단체이외의 공익단체의 경우로서 법무총재의 신청이 있는 때

⑤ 면세공익단체이외의 공익단체로서 그 총재원으로부터의 수입이 연간 총계 5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의한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a) 공익단체관리자중 1인 또는 2인이상

(b) 공익단체 이해관계있는 자

(c) 지방공익단체의 경우에는 그 공익단체가 있는 지역의 2인이상의 주민

⑥ 면세공익단체이외의 공익단체의 경우에 위원회는 공익단체관리자가 공익단체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당하게 그것을 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고 위원회가 공익단체관리자에게 위원회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칙의 제정을 요구하는 신청이 공익단체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설립일부터 40년이 경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이 항에 의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단체의 목적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⑦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로부터 신청이 행해진 것으로 보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a)공익단체가 공익단체관리자의 결원 내지 수탁자의 부재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공익단체위원회에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없는 때

(b)이 경우의 사정에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수의 공익단체관리자로부터 당해신청이 행해진 때

⑧위원회는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공익신탁수탁자를 그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한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우선하여 연합왕국(United Kingdom)내에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인 자 내지 관할권행사를 요구하는 신청의 당사자 또는 관계자인 자를 제외하고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각공익단체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우송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합왕국에서 인지되고 있는 수령자의 최후의 주소지에 송부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쟁송적 성격 내지 사건에 관계하는 법 또는 사실의 특수한 문제성 기타 이유로 법원이 판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법원의 명령으로 위원회에 부탁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 조에 의한 관할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이 조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소송은 법무총재가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⑫이 조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에 대한 소송은 공익단체,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명령으로 관리자 내지 직으로부터 해임된 자도 (공익단체관리자의 동의에 의하거나 공익단체에 특별감사관이 있는 경우는 그 승인에 의해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 명령이 공표된 날의 익일부터 계산하여 3월이내에는 언제든지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⑬소송에 적합한 사건이라는 뜻의 위원회의 인증 내지 대법원에 속하는 고등법원의 법관중 1인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에 의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⑭이 조에 의한 위원회의 명령으로 공익단체의 관리규칙을 정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익단체관리자와 동등한 이 조에 의한 소송의 권리를 가지며, 지역의 지방공익단체의 경우 그 지역 및 소교구council 또는 (웨일즈에서는) 지역 내지 그 일부를 포함하는 community의 council의 2인이상의 주민도 마찬가지로 한다.

⑮(생략)

제17조(규칙작성 또는 공익단체로서 적당한 목적의 재산충당변경의 추가권한) 생

략

제18조(공익단체보호를 위한 행위제한)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 단체에 관한 조사를 개시한 후라도 다음 각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 스스로의 발의로서 1) 내지 7)의 사항중 1 내지 2이상을 행할 수 있다.

(a)공익단체의 관리에 위반행위나 운영의 잘못이 있을 때

(b)공익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익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 내지 공익 단체의 것이 되는 재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때

1)명령으로 당해공익단체의 수탁자, 공익단체관리자, 공익단체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을(이 조에 의하거나 기타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파면을 위한 심사가 종료되기 까지 그 업무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

2)명령으로 공익단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생각하는 추가적인 공익단체관리자의 인원수를 지정하는 것

3)명령으로 공익단체가 보유하거나 공익단체를 위하여 신탁된 재산을 관재판에게 귀속시키거나 그러한 재산이 귀속하고 있는 자에 대해 관재판에게 당해재산을 양도하도록 요구하거나 당해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지정하는 것

4)공익단체에 대신하거나 공익신탁수탁자에 대신하여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위원회의 승낙 없이 당해재산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것

5)공익단체의 채무자에게 위원회의 승인없이 공익단체에 대한 그 채무이행으로서 또는 이행을 위하여 어떠한 지불도 하지말도록 명령하는 것

6)명령으로 (공익단체의 신탁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없이 공익 단체의 관리상 결부되는 거래 또는 행하는 지불의 성질 내지 금액을 제한하는 것

7)명령으로 공익단체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해서 (제19조에 따라) 수익자 및 운영자를 임명하는 것

②공익단체에 관해 제8조에 의한 조사를 개시한 후라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발의로 다음의 1) 내지 2) 또는 그 쌍방을 행할 수 있다.

(a)공익단체의 관리에서 위반행위 내지 잘못 운영이 있거나 있을 때

(b)공익단체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익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공익단체의 재산 내지 공익단체의 것이 되는 재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때

1)명령으로 위반행위 내지 잘못 운영에 관해 책임을 가지거나 당사자이며, 또는 자기의 행위로 그에 관여 내지 조장한 수탁자, 공익단체관리자,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을 파면하는 것

2)명령으로 공익단체의 관리를 위한 규칙을 작성하는 것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내지 잘못운영에는 (공익단체의 신탁상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익단체로서 적당한 목적을 위하여 운용되거나 운용가능성이 있거나 그 편입된 재산과 관련하여 과도한 금액의 공익단체의 업무종사자에 대해 보수 또는 사례를 수반한 고용 내지 기타 관리목적에 관한 고용도 포함한다.

④위원회는 명령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단체관리자를 파면할 수 있다.

(a)과거 5년간 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

1)이전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그 재산이 차압된 결과 해임된 사실이 있는 때

2)이전에 채권자와 화해하거나 채권자를 위하여 신탁증서를 부여한 결과 그 점에 관해 해임된 사실이 있는 때

(b)관리자가 청산법인인 때

(c)관리자가 1983년 정신위생법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행위무능력인 때

(d)관리자가 활동하지 않거나 활동하려는 의사 내지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하려 하지 아니한 때

(e)관리자가 잉글랜드 및 웨일즈외에 있거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활동하고 있지 아니하고 관리자의 부재 또는 활동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단체의 적절한 운영이 방해되고 있는 경우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명령을 발의하여 공익단체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a)이 조에 의하거나 기타에 의해 위원회가 파면한 공익단체관리자를 대신하는 때

(b)공익단체관리자가 없는 경우 또는 공익단체관리자의 결원 내지 그 중 어느 자의 부재, 무능력을 이유로 공익단체가 임명을 신청할 수 없는 때

(c)사단법인이 아닌 공익단체관리자 1인에 불과하여 위원회가 공익단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

(d)위원회가 기존 공익단체관리자중 1인이 공익단체관리자를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활동하지 아니하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활동

하지 아니하거나 잉글랜드 및 웨일즈외에 있는 자를 위하여 공익단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공익단체관리자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⑥이 조에 의해 스스로의 발의로 공익단체관리자를 파면, 임명하는 위원회의 권한에는 제16조에 의한 위원회의 공익단체관리자의 파면, 임명에 발할 수 있는 공익단체관리자에 대한 재산귀속 내지 양도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권한이 포함된다.

⑦이 조에 의해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공익신탁수탁자를 해임, 임명하거나 재산박탈, 이전을 위한 명령은 제16조에 의해 발해지는 명령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

⑧제9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6조제11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제16조에 의한 명령에 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에 의한 명령에도 운용된다.

⑨제1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내지 허가를 얻는 요건은 다음 각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공익단체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수익자 및 운영자를 지명하는 제1항의7)에 의한 명령에 대한 공익단체 또는 공익단체관리자의 소송

(b)제2항의1) 내지 제4항(a)호에 의한 명령으로 임무 또는 업무의 집행에서 제외된 자의 소송

⑩제16조제14항은 동항에 의한 명령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에 의한 공익단체의 관리규칙을 정하는 명령에 대해 적용된다.

⑪제1항의1)에 의한 명령을 발하는 위원회의 권한은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어느 자에 의한 임무 또는 업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89조제1항의 통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어느 자의 경우에 대해 발해지는 당해명령으로 그 명령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정직기간에 관해 그 자의 이름으로 증서를 집행하거나 기타 그 자를 위해 행위하는 것을 특히 어느 자가 행하는 것을 가능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또한 공익단체관리자의 경우에 대해 발해지는 당해명령으로 행위능력있는 인원수의 감소를 참작하기 위하여 공익단체관리자의 소송을 규율하는 규칙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⑫제1항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 조에 의한 관할권을 행사하기 전에 위원회는 연합왕국내에 존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가 판명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 공익단체관리자의 각각에게 관할권을 행사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우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왕국내의 수령자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지에 송부할 수 있다.

⑬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간격으로 제1항의1) 또는 3) 내지 6)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에 있어 당해명령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취소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 이행규정에 따를 것인가에 관계없이) 당해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⑭제1항의4), 5) 또는 6)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배심에 의하지 아니하는 약식재판에서 유죄판결로 표준제5급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⑮전항의 규정은 (위반에 관한 소송이 전항에 의해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공익신탁수탁자에 대해 제기할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의4) 또는 6)에 의한 명령의 위반에 관해서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공익신탁수탁자에 대해 신탁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⑯이 조는 면세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익단체를 위해 임명된 수익자 및 운영자에 관한 보충규정) 생략

제20조(제16조 내지 제18조의 소송을 위한 공개)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신청하는 공고가 1월이상 전에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공고일부터 1월이상 지정된 기간내에 이 법률에 의한 공익단체의 관리규칙을 정하는 명령을 발하거나 규칙을 발효시키는 명령을 요구하여 당해규칙을 법원 또는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회공익단체를 제외한 소교구(parish) 또는 (웨일즈에서는) community에 있는 지방공익단체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는 규칙초안은 소교구 또는 community council, council이 없는 소교구에서는 소교구회의의 의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규칙을 정하는 명령에 있어 전항에 의해 필요한 것과 동등한 공고가 1월이상 전부터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 의한 (관재관외의)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공익신탁수탁자를 임명, 해임 또는 파면하는 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명령의 경우에는 이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제18조제1항의2)에 의한 명령

(b)위원회가 수탁자를 해임, 파면하는 제안을 공고하는 것이 필요없고, 그것이 수탁자의 이익에 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탁자를 해임 또는 파면하는 명령

③위원회는 공익단체관리자 또는 공익신탁수탁자 내지 공익단체의 임무자, 대리인, 직원을 그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명령을 발하기 전에 연합왕국내에서 그 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로서 지정된 기간내에 위원회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신청을 1월이상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의해 요구되는 신청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통지로서 지정된 기간내에 위원회에 대해 표명된 의견의 진술을 참작하여야 하며, 수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수정을 하여 (재통지없이)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제16조제12항에 의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명령을 발하는 경우 당해 명령을 공고하거나 동항에 의한 당해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해 통지할 것인가의 여부는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당해명령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가 이 법률에 의한 공익단체의 관리규칙을 정하는 명령을 발하는 경우 당해명령의 사본은 명령이 고시되고부터 1월이상의 기간에 상식적인 시간대에 언제든지 위원회의 사무소 및 지방공익단체의 경우에는 공익단체의 지역내의 편리한 장소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⑦이 조에 의한 신청 또는 명령의 통지에는 위원회가 충분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청 또는 명령의 상세 내지 그에 관한 정보의 입수를 위한 지시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는 위원회가 충분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⑧공고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해 행해지는 어떠한 통지도 우송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합왕국의 수령자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지에 송부할 수 있다.

제21조(관재관에 대한 공익단체 신탁재산의 신탁 및 신탁의 종료) 생략

제22조(관재관에 귀속하는 재산에 관한 보충규정) 생략

제23조(1987년 용지복구법에 따른 토지의 경우의 박탈) 생략

제24조(합동투자기금의 설립규칙) 생략

제25조(합동예탁기금의 설립규칙) 생략

제26조(공익단체의 재산거래행위를 허가하는 권한등) 생략

제27조(후의에 의한 지분을 허가하는 권한등) 생략

제28조(공익단체의 휴면은행구좌에 관한 지시권한) 생략

제29조(공익단체관리자에 조언하는 권한) 생략

제30조(공익단체문서의 보관권한) 생략

제31조(사무변호사의 비용청구서에 대한 과세명령권한) 생략

제32조(위원회에 의한 소송) 생략

제33조(기타 자에 의한 소송) 생략

제34조(일정 소송에 있어서 증거가 되는 제8조 조사보고서) 생략

제35조(제16조 또는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신탁법인에 대한 조항의 적용) 생략

第5章 公益團體의 土地

제36조(처분제한) 생략

제37조(처분에 관한 보충규정) 생략

제38조(저당권설정의 제한) 생략

제39조(저당권설정에 관한 보충규정) 생략

제40조(공익단체에 의한 지가대의 면제) 생략

第6章 公益團體의 計算書, 報告書 및 說明書

제41조(회계기록의 보존의무) ①공익단체관리자는 당해공익단체의 모든 거래를 제시하고 설명하기에 충분하며 또한 다음의 사항을 행하기 위한 당해공익단체에 관한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a)언제라도 적당한 정확성으로 당해시점에서 공익단체의 재무상황을 개시하는 것

(b)관리자가 제42조제1항에 의해 어떠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회계보고서가 당해조항에 의한 규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당해관리자가 보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②회계기록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공익단체가 수령, 지출한 총액을 매일 제시한 기재와 수입 및 지출한 항목

(b)공익단체의 자산 및 채무의 기록

③공익단체관리자는 당해공익단체에 관해서 이 조의 적용상 작성된 회계기록을 당해기록이 작성된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의 종료부터 적어도 6년간 보존한다.

④전항이 어떠한 회계기록에 적용되는 때 공익단체가 전항에 규정하는 6년 이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전항에 따라 기록을 보존할 의무는 위원회가 기록파기 기타 처분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공익단체의 최후의 공익단체관리자가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⑤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인 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연차회계보고서) ①공익단체의 공익단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익단체의 각회계연도에 국무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서식

및 내용에 관한 요건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전항의 통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항에 의한 규칙으로 다음의 사항에 관해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a)당해보고서를 당해규칙에 명시 또는 규정된 방법과 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b)보고서에 대한 주기(notes)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전항에 의한 규칙으로 이 법률과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의 적용상 공익단체의 회계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어느 회계연도에 공익단체의 총수입이 2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관해 공익단체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회계보고서에 대신하여 다음 서류를 작성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a)수입지출보고서

(b)자산 및 채무보고서

④공익단체관리자는 다음의 서류를 (a)호에 열거하는 보고서에 관계하거나 (사정에 따라서는) (b)호에 열거하는 계산서 및 보고서에 관계하는 회계연도의 종료부터 적어도 6년간 보존한다.

(a)제1항에 의한 공익단체관리자가 작성한 회계보고서

(b)전항에 의해 공익단체관리자가 작성한 계산서 및 보고서

⑤제41조제4항은 회계기록의 보존에 관해 적용되는 것과 동시에 전항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 보고서의 보존에 관해 적용한다(제41조제3항을 제42조제4항으로 본다).

⑥국무장관은 명령으로 당분간 동항에 제시된 금액을 별도의 금액으로 하여 제41조제3항을 개정할 수 있다.

⑦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인 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공익단체회계의 연간감사 또는 연간조사) ①제2항은 공익단체의 총수입 또는 총지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도에 1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익단체의 회계연도(「당해연도」)에 적용한다.

(a)해당연도

(b)(해당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직전의 공익단체의 회계연도

(c)(전호에 지정하는 연도가 있는 경우) 전호에 지정하는 연도의 직전의 공익단체의 회계연도

②이 항이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익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한다.

- (a) 1989년 회사법 제25조(피임용적격)에 따라 회사의 회계감사인으로서 임명될 자격을 가진 자
- (b) 당분간 제44조에 의한 규칙으로 지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단체의 규칙에 의해 공익단체의 회계감사인으로서 임명될 자격을 가진 자
- ③ 전항이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의 공익단체의 회계는 공익단체관리자선출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검사 내지 감사를 받는다.
 - (a) 독립한 조사관(independent examiner), 즉 회계에 관하여 정규의 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실지경험을 가졌다고 관리자가 신뢰하는 이유가 있는 독립된 자의 조사를 받는 것
 - (b) 전항에 정하는 자에게 감사를 받는 것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으로 당해연도의 공익단체의 회계가 전항에 정하는 자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관하여 당해연도종료부터 10월이내에 제2항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때
 - (b) 제2항이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해연도의 공익단체의 회계가 제2항으로 정하는 자의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때
- ⑤ 위원회가 전항에 의한 공익단체에 관한 명령을 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인은 위원회가 임명하는 자로 한다.
 - (a) 당해명령이 전항(b)호에 의해 발하여진 때
 - (b) 공익단체관리자 스스로가 당해명령에 따라 감사인을 임명한 때
- ⑥ 전항에 의해 위원회로부터 임명된 감사인이 실행하는 감사의 감사인보수를 포함한 비용은 위원회가 상환한다.
- ⑦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할 수 있다.
 - (a) 독립된 조사관으로서 임명되는 자의 선택에 관해 공익단체관리자를 지도하는 것
 - (b) 제3항(a)에 따라 조사의 실시에 관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시를 하는 것. 이 설명 또는 지시는 일반적인 적용성에 있거나 특정한 공익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⑧ 소관 국무장관은 명령으로 당분간 제1항에서 지정된 금액을 별도의 금액으로 치환함으로써 동항을 개정할 수 있다.

⑨이 조는 법인인 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감사에 관한 보충규정등) 생략

제45조(연차보고서) ①공익단체관리자는 당해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관해 국무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당해연도중의 당해공익단체의 활동에 관한 관리자의 보고

(b)공익단체 또는 그 관리자 내지 임무자에 관한 기타 정보

②전항의 통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전항에 의한 규칙으로 다음 사항에 관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a)전항(a)호에 규정되는 연차보고서를 당해규칙으로 지정하거나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

(b)특정공익단체 내지 특정종별의 공익단체의 경우 또는 어느 공익단체 내지 어느 종별의 공익단체의 특정회계연도의 경우에 위원회가 제1항(b)호로 규정하는 요건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관해 이 조에 의해 작성이 요구되는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공익단체의 수탁자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a)당해연도의 종료부터 10월이내

(b)위원회가 당해보고서에 대해 특별한 이유에서 인정한 전호의 기간보다 장기간 내

④제5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제42조제1항에 의한 문제의 회계연도에 대해 작성된 회계보고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42조제3항에 의해 동등하게 작성된 수입수지보고서와 자산 및 채무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a)당해연도의 공익단체의 회계보고가 제43조에 의해 감사된 경우 회계보고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수지보고서와 자산 및 채무의 보고서에 관하여 감사인이 작성한 보고서 1부

(b)당해연도의 공익단체의 회계보고가 제43조에 의해 조사된 경우 그 조에 의해 독립된 조사인이 실시한 조사에 관하여 당해조사인이 작성한 보고서 1부

⑤전항은 법인인 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의한 공익단체관리자가 제출한 연차보고서에는 1985년 회사법 제7편에 의한 문제의 회계연도에 작성된 공익단체의 연차보고서 1부를, 그 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보고서

1부를 아울러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에 의해 위원회에 송부하는 연차보고서는 그 첨부되는 서류와 함께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위원회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면제공익단체 및 기타 제외공익단체의 회계와 연차보고서에 관한 특례)

①제41조 내지 전조의 어떠한 규정도 면제공익단체(exempt charity)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제공익단체의 공익단체관리자는 공익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회계장부를 보유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경우에 15월이하의 기간에 관한 수입과 지출회계로 구성하는 연속회계보고서 및 당해기간의 종료까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익단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위원회가 그를 파기하고 기타 처분하는데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면제공익단체에 관한 계산서와 회계보고서는 적어도 6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4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제3조제5항(c)호에 해당하는 것

(b)미등기인 것

④제7조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조의 규정은 (면제공익단체 또는 제3조제5항(c)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이외)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공익단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제3조제5항에 의해 면제되어 있는 것

(b)미등기인 것

⑤전항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의 공익단체관리자는 위원회가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명기되는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전항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에는 전조제1항에 의해 작성되는 연차보고서에 관해 동항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문제의 연도중의 공익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익단체관리자의 보고

(b)공익단체 또는 공익단체관리자 내지 임무자에 관한 기타 정보

⑦전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조 제5항에 의해 작성이 요구되는 보고서에 대해 당해보고서를 동조제1항에 의해 작성이 요구되는 연차보고서로 보고 적용한다.

⑧이 조는 전조제5항(c)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라는 때에는 제3조제5항(c)호에 해당하나 제3조제5호(b)호에 등록면제되는 공익단체를 포함한다.

제47조(연차보고서의 공중열람등) ①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보관하는 연차보고서 또는 기타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식적인 시간대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a)동항의 규정에 의해 보관하는 기간

(b)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위원회가 지정하는 전호의 기간보다 단기간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모든 행위를 한 경우 관리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월이 내에 당해요구에 따라야 한다.

(a)공익단체의 관리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익단체의 최근의 회계보고서 1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b)요구에 수반한 경비에 관하여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적절한 수수료를 당해관리자에게 지불한다.

③전항의 규정에서 공익단체의 최근의 회계보고서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a)다음 (b)호 내지 (d)호에 해당하는 공익단체이외의 공익단체의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감사 또는 조사받은 회계보고의 대상인 공익단체의 전회계연도에 관하여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계보고서 또는 수입지출보고서와 자산 및 채무의 보고서

(b)전조제3항에 규정한 공익단체의 경우, 회계보고서 또는 수입지출보고서와 자산 및 채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상인 공익단체의 전회계연도에 관하여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익단체의 회계보고서 또는 수입지출보고서와 자산 및 채무의 보고서

(c)법인인 공익단체의 경우, 1985년 회사법 제7편의 규정에 의해 최근에 감사받은 법인의 연차회계보고서

(d)면제공익단체의 경우, 법정 내지 기타 요건에 따라 최근 감사받은 공익단체의 회계보고 또는 그 회계보고가 감사받을 필요없는 경우, 공익단체에 관하여 최근에 작성된 회계보고

제48조(등록공익단체의 연차보고서) ①모든 등록공익단체는 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형식으로 또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 각회계연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서는 공익단체관리자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문제의 회계연도에 관하여 작성할 것이 요구된 연차보고서를 위원회가 송부할

것을 요구한 기일까지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특정공익단체 내지 특정종별의 공익단체의 경우 또는 어떤 공익단체 내지 어떤 종별의 공익단체의 회계연도의 경우에 제1항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49조(위반행위)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부과된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심에 의하지 아니한 약식재판에서 유죄 판결로 표준제4급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제45조제3항의 규정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5조제5항 또는 제4항을 포함한다)

(b)제47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

第7章 公益團體管理者的 法人化

제50조(공익단체관리자의 법인화)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는 부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 또는 지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면허(certificate)를 부여할 수 있다.

(a)공익단체관리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대해 관리자를 법인으로 하는 면허를 신청한 때

(b)위원회가 수탁자의 법인화가 공익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는 당해공익단체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면허의 부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a)공익단체관리자가 당해면허에 명기되는 명칭으로 법인으로 할 것

(b)(제54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당해관리자의 어떠한 관련있는 권리 또는 채무도 당해단체의 권리 또는 채무로 할 것

④법인화이후 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에 의한다.

(a)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의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있는 것

(b)공익단체의 목적을 위하거나 그 목적에 관계하여 재산의 소지,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법인화전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동일한 제한 및 한정에 복종하는 것 당해관리자로부터 당해관리자에 대해 계속되거나 개시된 관련소송행위는 당해법인명의로 당해법인이나 당해법인에 대해 계속하거나 개시할 수 있다.

⑤이 조에 의해 법인화한 단체는 법인인장(seal)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⑥이 조에서 다음의 용어의 의미는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권리 또는 채무」란 제51조에 의한 당해단체에 귀속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채무를 말한다.

「관련소송행위」란 당해재산에 관계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제51조(법인에게 귀속하는 재산) 1인 또는 2인이상의 자에게 속하거나 그들 자에 의해 소유되는 공익단체를 위해 신탁된 모든 부동산 및 동산은 어떠한 성질 또는 소유권이던 법인화의 면허로 그 법인에게 귀속한다. 자기명의로 주식, 자금 또는 담보가 공익단체를 위해 신탁되어 있는 1인 또는 2인이상의 자는 그들의 것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관재관에 귀속하는 재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법인화의 신청) ①이 장에 의해 위원회에 대한 법인화면허의 각신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a)서면으로 당해공익단체관리자가 서명할 것

(b)신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문서 또는 정보가 첨부될 것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되도록 다음 각호의 1을 요구할 수 있다.

(a)전항의 신청에 포함되는 기술

(b)전항(b)호에 의한 문서 또는 정보

제53조(수탁자의 지명 및 결원의 보충) 생략

제54조(법인화와 관련없는 수탁자의 의무 기타) 생략

제55조(법인화의 요건을 충족한 증거로서의 면허) 생략

제56조(법인화면허를 수정하는 위원회의 권한) 생략

제57조(신청 및 면허의 기록) 생략

제58조(명령 및 지시의 실시) 생략

제59조(법인화이전의 공익단체에 대한 증여가 이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 생략

제60조(법인화한 단체의 문서집행) 생략

제61조(법인화한 단체에 대한 위원회의 해산권)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확신한 경우 스스로의 발의로 명령에 명기된 기일에 당해단체의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다.

(a)법인화한 단체가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활동하지 아니한 경우

(b)법인화한 단체에 대해 해당공익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c)해당공익단체를 이전에 구성 또는 구성하고 있다고 위원회가 취급한 단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화의 시점에서 공익단체가 아니

게 된 경우

(d)법인화한 단체에 대해 해당공익단체의 목적이 가능한 이미 달성되거나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인화한 단체에 대해 해당공익단체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당해법인을 해산하는 것이 공익단체의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 경우 위원회는 명령에 명기된 기일에 당해단체의 해산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제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법인화한 단체에 관한 이 조에 의한 명령은 당분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공익단체를 위하여 신탁으로서 귀속하는 모든 재산을 당해공익단체의 수탁자에게 귀속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a)단체

(b)(공익신탁수탁자이외의) 기타 자

④(생략)

⑤이 조가 적용되는 명령이 법인화한 단체에 관하여 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a)법인의 권리 또는 채무가 해당공익단체관리자의 권리 또는 채무가 될 것

(b)법인에 의하거나 법인에 대해 계속, 개시되는 소송행위가 전항에 말하는 관리자로부터나 관리자에 대하여 계속, 개시할 수 있을 것

⑥~⑦(생략)

제62조(제7장의 해석) 이 장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화한 단체(incorporated body)」란 제50조에 의해 법인화된 단체를 말한다.

「해당공익단체(relevant charity)」란 법인화한 단체와의 관련에서 당해법인화한 단체로서 법인화된 공익단체관리자를 가지는 공익단체를 말한다.

「관리자(trustees)」란 공익단체와의 관련에서 공익단체관리자를 말한다.

第8章 公益會社(charitable companies)

제63조(해산) 생략

제64조(목적조항의 변경) 생략

제65조(일정거래업무의 무효) 생략

제66조(일정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필요) 생략

제67조(서면에 표기하는 명칭등) 생략

제68조(서면에 표기하는 지위등) 생략

제69조(회계보고의 검사) 생략

第9章 雜 則

제70조(광역투자에 있어서 제한완화) 생략

제71조(투자권한의 확대) 생략

제72조(공익단체관리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자) 생략

제73조(자격상실중 공익단체관리자로서 행위한 자) 생략

제74조(전재산의 양도, 목적을 변경하는 권한등) 생략

제75조(자본의 소비에 관한 권한) 생략

제76조(지방기관의 지방공익단체목록) ①주, 지구 또는 런던구의 council 및 런던시 공동council관할내의 어떠한 종별의 지방공익단체의 목록을 유지할 수 있고, 당해목록에 포함되는 정보 또는 당해목록의 요약 내지 발췌본을 공표할 수 있다.

②이 조에 의한 지방공익단체 내지 어떠한 종별의 지방공익단체의 목적을 작성하거나 유지하려는 council은 청구에 의해 위원회는 무상으로 당해목록과 관련한 공익단체등록등의 기재사본이나 이전의 사본이 제공된 적이 있는 기재에 대한 변경사항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추가청구가 없더라도 council에 당해변경사항을 제공하도록 배려할 수 있다.

③이 조에 의해 유지되는 목록은 상식적인 시간대에 언제든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council은 위원회가 동의하는 조건하에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의 범위내에 또는 위원회가 동의하는 경우 임의단체를 이 조의 적용상 그 대리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적용상 「임의단체(voluntary organization)」란 공공기관 또는 지방기관이 아닌 그 활동이 영리목적 이외로 행하는 단체를 지칭한다.

⑤(생략)

제77조(지방기관의 지방공익단체의 조사) ①주, 지방, 런던구 및 런던시 공동 council은 이 장의 다음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익단체관리자와 협력하에 council관할구역에서 동일 내지 유사목적의 지닌 일단의 지방공익단체의 업무의 조사를 개시하고 실행하며, 수탁자와의 협의후 council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당해조사에 관한 보고 및 조사에 의한 권고를 위원회에게 할 수 있다.

②이 조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council은 (다른 공익단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당해council의 관할구역내의 지방공익단체의 업무에 관한 조사에 다른 자와 협력하고 당해조사의 개시 및 실행에 있어서 다른

자와 함께할 수 있다.

③이 조에 의해 council이 개시한 조사는 공익단체관리자의 동의없이 어떠한 공익단체에도, 교회공익단체에 대해서도 확대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에 의한 지구가 개시한 조사는 council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유사 또는 서비스를 보완할 목적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익단체의 어느 주내의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가 당해주의 council의 동의를 얻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대되지 아니한다.

⑤전조제4항 및 제5항은 동조의 적용상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의 적용상 적용된다.

제78조(공익단체간 및 공익단체와 지방기관간의 협력) ①지방council 및 당해 council의 직무를 수행하는 합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a)council 또는 합동위원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유사하거나 서비스를 보완할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단체와 그 서비스 또는 공익단체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를 위하여 council 또는 합동위원회의 활동과 공익단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b)공익단체와의 협정이 이 항에 의해 체결되었는가를 불문하고 전호의 자를 위하여 당해공익단체에 대해 council 또는 합동위원회가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개하는 것

이 조에서 「지방」이란 주, 지구, 런던구, 소교구 또는 (웨일즈에서) community council을 말하며 런던시공동council 및 Scilly섬의 council도 포함한다.

②공익단체관리자는 공익단체의 업무를 촉진하거나 보다 효율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익단체의 신탁상 어떠한 사항이라도 이 항에 의해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권한을 가지며, 수입으로부터 또는 공익단체의 수입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으로부터 그 행한 경비를 지출한다.

(a)제77조에 의해 행하는 재조사 또는 기타 공익단체 내지 어떤 종별의 공익단체의 업무에 협력하는 것

(b)다른 공익단체의 활동과 기관 내지 기타 공익단체의 활동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해 활동하는 기관 또는 그 공익단체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

(c)이익이 될 것이 예상되는 자에게 다른 공익단체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당해정보를 공표하는 것

제79조(소교구 공익단체) 생략

제80조(일정한 스코틀랜드의 공익단체위원회의 감독) 생략

제81조(공익단체의 총회통지를 하는 방법등) 생략

제82조(문서집행의 방법) 생략

제83조(관리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에 대한 권원의 이전 및 증거) 생략

第10章 補 則

제84조(위원회에 의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문서의 목사물의 제공) 생략

제85조(위원회에 지불하는 요금 및 기타 금액) 생략

제86조(규칙 및 명령) 생략

제87조(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요건의 실시) 생략

제88조(위원회의 명령의 실시) 생략

제89조(위원회의 명령에 관한 기타 규정) 생략

제90조(위원회의 결정) 생략

제91조(명령 및 지시의 송달) 생략

제92조(위원회의 소송) 생략

제93조(증거에 관한 잡칙) 생략

제94조(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소송제기의 제한) 생략

제95조(법인단체의 위반행위) 생략

제96조(공익단체 또는 특정종별의 공익단체라는 때의 해석) 생략

제97조(일반해석) 생략

제98조(결과로 발생한 개정 및 폐지) 생략

제99조(시행 및 이행규정) 생략

제100조(약칭 및 적용지역) 생략

附 則 (생략)

Ⅲ. 프랑스의 非營利社團契約에 관한 法律 (1901.7.1.)

第I章 總 則

제1조 비영리사단은 2인 또는 복수인이 이익분배이외의 목적으로 영속적으로 그 지식 내지 활동을 공유하는데 합의하는 계약이다.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계약 및 의무에 적용가능한 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2조 비영리사단은 사전허가없이 또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법적능력을 향유한다.

제3조 비영리사단으로서 법과 양속에 반하는 불법적인 동기 내지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거나 국토보전 및 공화국정부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무효로 한다.

제4조 일정기간에 설립되지 아니한 비영리사단의 모든 구성원은 만기가 된 당해 연도의 거출금을 지불한 후, 조항의 여하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5조(1971년 7월 20일 법률 제71-604호 제1조, 1981년 10월 9일 법률 제81-909호 제1조 I 및 II) ①제6조에 규정하는 법적능력을 획득하려는 모든 비영리사단은 설립자의 배려로 공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②이를 위한 필요한 신고는 당해비영리단체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관청에 대해 한다. 신청에 의해 당해사단의 명칭 및 목적, 소속하는 시설장소와 명칭,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의 직업, 주소 및 국적을 통지한다. 신고에는 규약을 2통 첨부한다. 신고의 수령서는 5일이내에 발행한다.

③비영리사단이 국외에서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당해사단의 주요한 시설이 위치하는 관청에 대해 한다.

④비영리사단은 상기 수령서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적으로 된다.

⑤비영리사단은 관리·감독에 관해서 발생한 변경 및 그 규약상의 수정 전부를 3월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이 수정 및 변경은 신고일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⑦이 수정 및 변경은 다른 특별한 장부에 기재되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정청 또는 법원에 제시한다.

제6조(1948년 6월 23일 법률, 1987년 7월 23일 법률제87-571호제16조 I) ① 정식으로 신고를 제출한 모든 비영리사단은 특별한 허가없이 출정하고, 현실증여 및 공익기관의 증여를 수령하며, 국가, 지방, 시읍면 및 그 공적기관으로부터 보조금외에 이하의 것을 유상으로 입수, 소유 및 관리할 수 있다.

1. 구성원의 거출금 또는 거출금을 면제하는 소정의 액. 다만, 이 액은 10,000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비영리사단의 관리 및 구성원의 집회에 제공되는 사무소등
3. 당해사단이 정하는 목적수행을 위하여 엄밀한 의미에서 필요한 부동산

②(1987년 7월 23일 법률제87-571호제16조 II) 구원활동, 자산활동, 과학적 또는 의학적 연구를 전적으로 하는 신고를 제출한 비영리사단은 Conseil d'Etat의 의결을 거친 Décret로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수령할 수 있다.

③비영리사단이 증여된 것에 대해 수령허가를 받는 배분과는 다른 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행위는 Conseil d'Etat의 의결을 거친 Décret로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제7조(1971년 7월 20일의 법률제71-604호제2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비영리사단의 해산은 관계자의 청구에 의한 것도, 검찰의 기소에 의한 것도 대심법원이 선고한다. 검찰은 특정일에 심문하며 법원은 제8조에 규정하는 제재를 과하는 조건하에 잠정적으로 아울러 모든 불복신청에 대항하여 사무소 등의 폐쇄와 비영리사단의 구성원에 의한 모든 집회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1935년 10월 23일의 Décret = Loi)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관계자 또는 검찰의 청구로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8조 ①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6프랑이상 200프랑이하의 벌금, 재범의 경우에는 2배의 벌금에 처한다.

②해산판결후 불법으로 유지되거나 재건한 비영리사단의 설립자, 관리자 내지 감독자는 16프랑이상 5,000프랑이하의 벌금 및 6일이상 1년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③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주거의 사용에 동의하거나 해산된 비영리사단의 구성원의 집회에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전부 같은 형벌에 처한다.

제9조 자발적인 정관에 의하거나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당해비영리사단의 재산은 정관에 따르거나 정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전체회의로서 결

정한 규칙에 따라 귀속을 정한다.

第II章 公益社團

제10조(1987년 7월 23일의 법률제87-571호제17조 I) ①비영리사단은 적어도 3년간 운영심사기간후 Conseil d'Etat의 의결을 거친 Décret로서 공익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공익인정은 동등한 형식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인정을 신청하는 비영리사단이 3년간에 걸쳐 예측할 수 있는 자력이 수지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심사기간은 필요하지 아니한다.

제11조(1913년 7월 2일의 법률, 1966년 6월 13일의 법률 제87-571호 제17조 II) 당해비영리사단은 정관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시민생활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단은 사단이 스스로에 부과한 목적에 필요한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 비영리사단의 모든 유가증권은 기명증권, 저축에 관한 1987년 6월 17일의 법률 제87-416호 제55조에 규정하는 기명보증의 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 증권 또는 前保證으로서 프랑스은행이 승인한 유가증권으로서 예탁하여야 한다.

당해 비영리사단은 민법전제910조에 규정하는 요건으로 증여 및 유증을 수취할 수 있다. 증여증서 내지 유증조항에 포함되는 부동산으로서 비영리사단의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무상증여의 수령을 승인하는 Décret 또는 명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 및 형태에 따라 양도되는 것으로 한다. 그 대가는 당해사단의 금고에 불입된다. 상기에 불구하고 당해사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야, 삼림 내지 삼림용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第III章 宗教團體 (여기서는 修道會를 의미한다)

제13조(1942년 4월 8일의 법률) ①모든 종교단체는 Conseil d'Etat의 동의를 거친 Décret로서 법적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이 단체에는 이전에 허가된 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법적 승인은 Conseil d'Etat의 의결을 거친 Décret로서 수도회의 신규시설의 전부에 부여할 수 있다.

③수도회의 해산 또는 시설의 철거는 Conseil d'Etat의 동의를 거친 Décret로서 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 ① 모든 종교단체는 그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보유한다. 종교단체는 매년 전년도 회계보고서와 동산, 부동산의 재산목록의 명세서를 작성한다.

② 단체는 구성원의 완전한 명부로서 그 명칭 및 단체내부에서 호칭되는 명칭, 국적, 연령 및 탄생지와 그 입회일자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단체의 본거지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당해단체는 知事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상술의 보고서, 명세서 및 명부를 이동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는 知事の 요구에 대해 허위통보를 하거나 복종을 거부한 단체의 대표자 내지 지도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벌에 처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제18조 생략

제19조 형법전 제463조의 규정은 이 법률에서 규정한 위반에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 이 법률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조치는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① 형법전 제291조, 제292조, 제293조 및 동법전 제294조의 비영리사단에 관한 규정, 1834년 7월 5-8일의 정령 제20조, 1834년 4월 10일의 법률, 1848년 7월 28일의 Décret 제13조, 1881년 6월 30일의 법률 제7조, 1872년 3월 14일의 법률, 1825년의 5월 24일의 법률 제2조제2항, 1852년 1월 31일의 Décret 및 이미 이 법률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삭제한다.

② 직업조합, 상사회사 및 공제조합에 관한 특별법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의2(1981년 10월 9일의 법률제81-909호 제3조) 이 법률은 해외영토 및 매요트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다.

第IV章 海外非營利團體

제22조~제35조 (삭제)

행정법제분석 97-2
NPO(비영리조직)의 活性化를 위한 立法方向

1997년 12월 5일 印刷

1997년 12월 10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주)東洋商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값 6,000 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30-4 93360

